

'보안관찰법' 폐지 위한 도구되어

9. 7. 30 한겨레

전민련 서준식씨 옥중편지

꽃다운 한 젊은이가 백골단의 쇠피이프에 맞아 죽은 뒤 우리의 5월의 거리는 이에 분노하는 수많은 군중의 함성으로 채워졌다. 이 무렵 나의 사랑하는 후배 김기철씨는 폭력적인 타도를 위하여 모두가 하나되어야 한다고 절규하면서 스스로 몸을 사르고 산화해 갔다.

이때부터 정권측에서 근거도 없이 유서대필자로서의 신자살 배후설 내지 유서대필설은 분명히 김기철씨의 죽음을 모독하면서 제야 운동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노 정권 타도의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5월 항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잔악한 음모였다.

나는 유서대필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힌 김기철씨와 함께 끝까지 명동성당에 남아 이 잔악한 음모와 대결해왔다.

김철의 아내에 대한 기소이유는 이처럼 내가 김철의 조카음모에 맞서 싸워 왔다는 데 있다. 나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나의 발을 묶기 위하여 '경찰이 우선

나를 구속하는 명분으로 동원한 것은 김철 및 시위에 관한 법문이었다.

그러나 수십만 군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분노하면서 "백골단 해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고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는 것 외에 나에게서 그러면 김철 주도 혐의도 찾아내지 못하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발을 묶기 위하여 그 다음으로 동원한 것이 보안관찰법이었다. 관 3년 전부터 사실상 계속 묵인하여 온 나의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세삼스럽게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나는 이와 같은 구속은 순전히 경찰의 제멋대로의 권력에 따른 것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국가 최고 권력집행기관임을 내세우는 경찰이 이런 비열한 수법을 가지고서 최

이에 나는 이런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부터 고향에 한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도주할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나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가각되었고 결국 기소가 강행되었다. 그것은 공안통치의 커다란 그늘 아래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과거 17년 동안 피눈물 속에서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전대미문의 악법이었던 사회안전법을 끝내 폐지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나는 다시 최장급 속에 갇힘으로써 사회안전법의 축소판인 보안관찰법과 정면 대결해 그것을 깨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운동가로서 하나의 큰 영광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범들이 계속 무겁게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기필코 폐지되어야 하며 나는 이제부터 이를 위한 범정부준비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성동구지소 수감중>

서준식씨의 시련 유서대필 공방에서 보안관찰법까지

9. 7. 31 한겨레

유신체제가 만들어낸 온갖 악법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인권탄압법으로 악명높던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것은 89년 초여름이었다. 당시 범조-연은 등 각계의 뒷받치는 완전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는 데 그치지 않았지만 그나마의 반민주악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열망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계기가 한. 수인의 처벌할-유중투쟁이었던 기억에도 새롭다.

서준식씨, 제일동포로 서울대 법대 4학년에 재학중 '모국유학생간첩단' 사건에 관련된 7년의 형기를 다 살고도 무려 네 차례나 거듭해서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감옥살이를 해야 했지만, 인간의 존엄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 반인간적 악법과 싸우고 또 싸웠던 것이다. 그 서준식씨에게 그가 싸워 가가스로 바퀴놓은 그 보안관찰법의 유효기간이, 폐위적 구속기소했다는 기막힌 보도가 잇따라 있었다. 그것도 보안관찰법이 실사편 이래 처음으로..

그가 자유의 몸이 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여섯의 몸이 된 것은 지난달달 '범국민대회'의 관계자들과 명동성당 농성을 끝내고 자진출두하면서였다. 전민련 인권위원으로서 그는 유서대필 혐의로 물러간 김기철씨를 도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던 터였다. 그의 구속사유가 김시범 위반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가 주장하듯 그는 강경대처 타살정국의 소용

몰이 속에서 수만 수십만 시민들과 함께 '백골단 해체' '노정권 퇴진'을 외쳤을 뿐 각종 집회를 주도한 '대체회의' 지도부에 있지 않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구속적부심의 변호인 신문에서 유서대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구속한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비난한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게 된다. 더욱이 그를 기소하면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은 '유서대필 공방'과 관련해 진실규명에 앞장서온 데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전민련의 반박성명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3년전부터 사실상 묵인해온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지금이야 문제삼는 경찰의 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87년 봄 청주 보안감호소에서 51일간의 처절한 단식투쟁을 통해 '사회안전법'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홀로 맞섰던 서준식씨는 "이제 다시 최장급에 갇힘으로써 사회안전법의 축소판인 보안관찰법과 정면대결해 그것을 깨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운동가로서 큰 영광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비정할 옥중편지를 보내왔다. 17년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면 서 그가 눈사물을 뿜으며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살고 있다"고 울먹였던 그 조국이 또다시 그에게 안겨준 시련에 온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유서대필을 둘러싼 공방과 함께 세삼스럽게 떠오른 보안관찰법 폐지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유신체제가 만들어낸 온갖 악법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인권탄압법으로 악명높던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것은 89년 초여름이었다. 당시 범조-연은 등 각계의 뒷받치는 완전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는 데 그치지 않았지만 그나마의 반민주악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열망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계기가 한. 수인의 처벌할-유중투쟁이었던 기억에도 새롭다.

서준식씨, 제일동포로 서울대 법대 4학년에 재학중 '모국유학생간첩단' 사건에 관련된 7년의 형기를 다 살고도 무려 네 차례나 거듭해서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감옥살이를 해야 했지만, 인간의 존엄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 반인간적 악법과 싸우고 또 싸웠던 것이다. 그 서준식씨에게 그가 싸워 가가스로 바퀴놓은 그 보안관찰법의 유효기간이, 폐위적 구속기소했다는 기막힌 보도가 잇따라 있었다. 그것도 보안관찰법이 실사편 이래 처음으로..

그가 자유의 몸이 된 지 3년 만에 다시 열여섯의 몸이 된 것은 지난달달 '범국민대회'의 관계자들과 명동성당 농성을 끝내고 자진출두하면서였다. 전민련 인권위원으로서 그는 유서대필 혐의로 물러간 김기철씨를 도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던 터였다. 그의 구속사유가 김시범 위반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가 주장하듯 그는 강경대처 타살정국의 소용

면서 늘어나는 김양 동에게 "도산서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며 승용차에 태운 뒤 이곳에서 1백km 떨어진 대구시내까지 강제로 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서-김씨필적 전혀달라"
일본 필적감정가 재확인
【도쿄-연합】 본진한 필적감정가 유서와 김기철씨의 필적을 감정했던 일본인 오니시 요시오는 22일 오후 도쿄도에 있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의 유서는 김씨 필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히고 "한국 법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적감정 배경에 대해 "나는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평소 안면이 있는 변호사 나카에이(전 JNCC 상임위원)가 부탁을 해와 감정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공방 법정서 배수진

강기훈씨 첫 공판 관심쏠려 한겨레 7/28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열릴 예정으로 있어 법정에서의 일대 격전이 예상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12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지 45일만에 열리는 이번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 공권력의 위신을 걸고 공소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 검찰과 제야의 도덕성을 걸고 무죄증명을 위해 노력해온 변호인단은 서로간에 한 치도 양보할수 없는 배수진을 칠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기소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서와 강씨의 필적이 같다는 국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본신사건을 전후해 강씨의 행적이 미심쩍다는 점 △순진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26)씨 등 참고인 7명의 진술 등을 유죄의 정황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19일간의 강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살방조죄를 증명할 진술이나 결정적 증거를 확보 못한 검찰은 내심 초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강씨 기소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서도 이렇다하게 진전된 증거를 얻지 못했으며 변호인단이 공소필적사유로 잡고있는 '법피임시와 장소 등 불명시'에도 여전히 법문이 잡혀있다.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는 문제와, 1심 재판결과 유죄를 받아내다하더라도 국민들을 보다 명백하게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유서대필의 진위여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강씨의 유죄가 인정될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 8명의 변호인단은 아직 강씨에게 많은 새로운 증거

의 제시와 검찰에 의해 수배된 관련자의 법정 증언 등으로 검찰 기소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속초의 한 대학에 가서 말한 내용을 녹음해 김씨가 스스로 기록해둔 문건을 이미 확보, 이 문건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음을 새로운 반박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김씨와 함께 자취했던 인근 제(26), 장준호(26)씨와 홍씨로부터 수습을 건네받았던 원순용(2

서의 필적과 김씨의 필적이 같다고 판정한 일본인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를 법정 증인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첫 공판에서 강씨에 대한 기소를 '각각'해 줄 것은 법원에 요청한다는 전략도 세워 놓고 있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에 법피 임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범행 방법도 보다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등 유서대필의 '법피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강씨를 자살방조죄로 기소한 것은 분명한 공판 '결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강씨를 혐노병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한 것도 무죄선고 때 강씨가 석방된

검찰 걸로 유죄입증 자신감...내심 초조 변호인 반박증거 확보 기소허구성 증명벌려

7)씨 등 수배된 참고인들이 김씨를 무릅쓰고 법정에서 나와 증언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하면서 이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검찰의 국과수 필적감정을 뒤엎고있는 일본 전문 필적감정가의 감정결과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도 강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채택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서 유

는 것을 막는 전략이지만 그 이면에는 검찰이 강씨의 자살방조부분의 유죄증명에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시위 정국의 핵심이었던 유서대필-자필 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증언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불붙겠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재판 결과를 떠난 최후의 승자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길우 기자)



KNCC '공정재판 기대' 판사(가)로 고교교사의 인권이 위협(위협) 받을 때(가)는 고등 법원(법원)에 유서(유서)를 사(사)고(고) 1년(년)간(간)을 기(기)한(한) 뒤(뒤)에(에) 대(대)법(법)원(원)에(에) 상(상)소(소)를(를) 하(하)는(는) 것(것)을(을) 기(기)대(대)하(하)는(는) 것(것)이다(다).



20일 오전 김기훈씨의 유서를 대법원 형사1부 구속기소전 전인한 송무부장 김기훈(가) 및 재판장 정기(가)를(를) 회(회)담(담)하(하)고(고) 있다(다). (이(은)은(는) 가(가)자(자))

9. 2. 29 1986.10.10(수) 1016호

김기훈씨 첫공판 이모저모

“법정서 언질 가능성” 이유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1985년 4사건 신문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치적 음모로 구속” 모두진술 경비심업 손가방속 사탕까지 압수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재이 입증세력 탄압” 주장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김씨 입정에 일부서 박수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내용 ‘시달’ 강조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김기훈이 자신에게 배척(배척)을 당(당)한(한) 것(것)을(을) 기(기)대(대)하(하)는(는) 것(것)이다(다).

김씨는 “김기훈이 자신에게 배척(배척)을 당(당)한(한) 것(것)을(을) 기(기)대(대)하(하)는(는) 것(것)이다(다).

김씨는 “김기훈이 자신에게 배척(배척)을 당(당)한(한) 것(것)을(을) 기(기)대(대)하(하)는(는) 것(것)이다(다).

“국과수 필적감정은 허위”

김기훈씨 첫공판 3명이 쓴 전민련일지 동일필적 결론

전민련 사회부장 정기(가)를(를) 회(회)담(담)하(하)고(고) 있다(다). (이(은)은(는) 가(가)자(자))

9. 2. 30 1986.10.11(목) 1017호

김씨 보안법적용 의도 비추

○지난 28일 서울형사1부 대법정에서 열린 전민련 송무부장 김기훈(27)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에서 김기훈은 장교가 유서를 내릴 때 자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운동세력의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도장술처 ‘말어두기’ 조사

○서울 서대문구 용문2동 등 사무소에서 주민도장 2백20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경위를 조사 중인 서대문구청과 서부경찰서가 이 도장들이 원본사본이 작성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만 급급해 경과 중요한 도장술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아 ‘말어두기’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서대필은 공산당식 행동” 몰아붙여 견제

‘양천구청장 대기발령’ 희생양 성격 짙어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유서대필 안했다

○김기훈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받던 김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0일 서울형사1부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관공무원이 놓여 있는데 보기 드물게 법정의 분위기는 법정의 비좁은 공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원

(1964.6.9 233쪽(제12호)가) (1972.12.29 276쪽(제2호)다) 270 第862號



권태평씨

모두가 함께한 진실의 싸움

기대신문 10.1

강기훈씨 어머니 특별기고

『강기훈 피고인! 피고인은 공산주의의 심대신조를 아나요?』 『모릅니다』 『공산주의 심대신조에 보면 투쟁을 위해서 아버지도 죽일 수 있다는 조목이 있는데 알지요?』 『모릅니다』 『피고인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김기철의 자살을 도와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유서를 대신 써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8월28일 기훈이의 일차공판때 장광 내사간에게 걸친 검사신문의 끝머리 부분이다. 아침10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오후4시가 될때까지 기훈이의 모든진술시간 20여분과 정심시간 1시간여의 모든 시간을 검사의 신문으로 메우고 있었다. 들고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말만 바꾸어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퍼부어대고 있었다. 유서대필 관계가75문항, 혁노명 관계가 1백문항으로 완전히 주제가 진도된 신문이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는 목청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만 좀 해두라고. 가슴은 썩어 지는듯 했고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참고 참던 나는 집에 와서 결국 남고 말았지만 공판장에서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간의 일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번의 가족면회도 허락되지 않았던 19일동안의 유서대필 조사시간, 그후 15일간의 혁노명 추가 조사시간이 어떠했을까 하는것을... 공개석상에서도 저렇게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집요하게 유도신문을 하는데 필살에서는 어땠을까? 검사가 8~9명 그립에 수사관이 수십명 이를 밤을 세운것이 두번, 하루밤씩 새운것이 세번... 아-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왜? 금쪽같은 내자식이 여러고 정답고 효자인 내자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가혹한 곤욕을 치뤄야

하는것일까?
나는 우리 기훈이가 학생운동을 시작할때 부터 지금까지 7년여동안 내 나름으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온 것이 있다. 물론일을 위해 나라사랑을 위해 고생하는 자식앞에 걸림돌이 되지 말자는 것과 자식이 나 남들앞에서 눈물을 보이거나 추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것 두가지이다. 이다짐을 처음 한 두번 외엔 대체로 지켜왔다고 자부한다. 그러자니 때론 심장이 오그라 붙는것 같은 아픔을 느낄때가 많다. 그래도 학생때는 시위도 주도했고 민정당 연수원에도 들어갔고 했으니 악법도 법이나가 담연한 것으로 생각했었고 2년 형도 비교적 수월하게 보냈던듯 싶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근거도없이 떠도는 해괴한 루머앞에 아연할 수밖에 없었고 무자비한 언론의 난도질 앞에 치를 떨어야 했다.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같이 힘들려 들어가자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제반에는 이 사회의 소금이 되고자 양심을 지키며 때론 밤을 지새며 고민하고 또 결심히 일해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갖은 협박과 회유와 잠안제우기 고문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차라리 허위자백이라도 해버릴까 했었다는 유혹도 뿌리치고 그래도 끈질긴 반박신문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것만을 다짐으로 여기지만 죄없이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여러 저리 끌려다니며 고군분부하는 지친 자식의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유서대필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운동권에 대한 그릇된 시각. 내자식을 무슨 불달린 괴물이냐 보듯이 하는 사람을 대할라치면 나는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싶을 때가 있다. 얼굴 생김 처럼 착하고 유순하기만한 내자식이 친구의 돌연한 사고사에 멧달을 두고 슬피 울던 내자식이 남의 죽음을 방조한 죄인으로 물러다니...

참을수 없는 고통과 비에도 기다리면 지나가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면? 이제 공판이 시작 되었고 10월 9일이면 4차 공판이다. 때론 검사보다 한술 더뜨고 들고 늘어지는 판사들의 양심을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미지수이지만 기다려 보는 수밖에... 어쨌든 나는 강경대 타살 이후의 돌출된 정국의 반전을 위해 내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모든 사람과 내아들의 등을 밟고 출세를 꿈꾼 모든 세력들을 끝까지 지켜 볼것이다. 부릅뜬 눈으로...

그래도 이방엔 진실을 믿어주고 그것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도와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기에 또 진실은 어느편가 가려진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다. 처음부터 진상을 가리기 위해 여러모로 수고 하였고 JNCC까지 필적감정을 의뢰해 필적감정 결과를 얻어내 일반인들의 시각을 많이 풀려놓게 해주신 JNCC여러 목사님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보호해주신 신부님들, 재야의 여러어른들 또 기훈이의 선후배들, 친구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주신 우리교회 여러 어른들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실무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자식을 돌아오지 못할곳으로 보내신 여러 부모님께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언젠가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때 억울하게 눈을 감은 우리의 자식들도 지하에서나마 활짝 웃게 될 것이라고...

9.10.11 한겨레

투시경

9일 열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4차공판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강씨의 자살 방조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거의 유일한 검찰측 증거를 제공해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책임자인 김형영(52) 문서분석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공판을 지켜본 변호인과 방청객들은 김씨 증언이 예상밖으로 공격하고 허술한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가공공기관의 감정전문가의 입에서는 나름대로

로의 정연한 논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김씨의 증언은 대들거리는 모습과 함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는 많은 방청객들의 평가였다.

변호인측은 법정에서 특히 김기철씨 유서와 전민련 업무일지를 대조하면서 3명이 쓴 업무일지 글씨 중 강씨 글씨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답변에 그쳤다.

더욱이 김씨는 감정에서 두 가지 필적을 비교할 때 동일 특정 비율이 70% 이상이면 같다고 판정한다면 이 역시 사건에서 나온 감정비율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자신없는 '유서감정 증언'

이 김씨 유서와 강씨 자술서를 어떻게 알아내고 이를 감정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추궁했다.

변호인들은 "업무일지는 실제로 세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도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감정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씨는 업무일지 중 유서와 같은 글씨체가 있는지를 찾는

또한 변호인들이 국과수측이 김씨 유서와 강씨 자술서를 감정한 결과 동일하다고 판정했으나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고 캐묻자 유물추물하다가 "다르다"고 시인까지 했다. 이때 재판장이 "처음부터 감정을 제대로 했으면 변호인단에게 이러한 지적을 받았겠느냐"며 질책까지 하자 법정엔 술렁이기도 했다.

(이재열 기자)

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바다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7백98명으로 하루 평균 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 들어 8월 말까지는 5백8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9.26.목

6년 전에 본 것이 대부분이어서 확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기훈씨 어제 4차공판

전민련 김기철씨 분신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4차공판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는 검찰신문에서 "업무일지는 김철이 감정을 의뢰하면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서와 동일한 부분을 찾아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해 살펴본 결과 이틀치 분량의 글씨가 나머지

와 다르다고 판단돼 이 부분을 빼고 감정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변호인이 "업무일지에 다른 사람의 글씨가 있다고 판단해놓고도 감정에서는 전혀 언급없이 업무일지와 유서필적이 같다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유서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뿐 업무일지를 두 사람이 썼는지 세 사람이 썼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유서와 같은 부분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감정했고 그 결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 동일필적이 라고 기록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업무일지 중 유서와 같은 글씨체가 있는지를 찾는

김씨는 업무일지 중 유서와 같은 글씨체가 있는지를 찾는

제 13346호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홍성은씨 범정출두 논란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본인 검찰진술 모두 사실... 출석 않겠다... 변호인단 공개증언 필수적... 拘引요청... 筆跡진위 함께 재판 큰 변수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제 1063호

한겨레

홍성은씨 범정출두 논란

검기훈 재판 홍씨 "검찰진술 사실... 불출석 고수" 강씨 변호인 "증인신문 꼭 필요... 구인 요청"

본인진술만 전한 사죄부담... 검기훈 재판 홍씨 "검찰진술 사실... 불출석 고수" 강씨 변호인 "증인신문 꼭 필요... 구인 요청"

검기훈 재판 홍씨 "검찰진술 사실... 불출석 고수" 강씨 변호인 "증인신문 꼭 필요... 구인 요청"

검기훈 재판 홍씨 "검찰진술 사실... 불출석 고수" 강씨 변호인 "증인신문 꼭 필요... 구인 요청"

검기훈 재판 홍씨 "검찰진술 사실... 불출석 고수" 강씨 변호인 "증인신문 꼭 필요... 구인 요청"

1991년 10월 25일(금요일) 5면

사설

검찰쪽 증인 홍성은씨의 아리송함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권운동원... 홍성은씨 범정출두 논란... 검찰쪽 증인 홍성은씨의 아리송함... 법정에서 '유서대필' 진상 밝혀야

홍씨 비공개조건 법정증언 용의 재판부서 검찰 요청 거부

본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씨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기훈(27)씨에 대한 6차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25)씨의 증언을 검찰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6차공판을 앞두고 홍씨와 가족들이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경우 언론 등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나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하며 재판부에 비공개증언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

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으로 볼 때 홍씨의 공개증언이 반드시 필요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의 비공개진행요청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홍씨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홍씨가 계속 불출석의사를 밝히고 있고, 출석할 경우라도 비공개로 증언하겠다고 해 재판부에 비공개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도 재판부에 불출석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공개재판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담당재판부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은씨 제한적 공개증언

오늘 오후 보도진만 입회 허용키로

본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씨 유서대필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6차 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가 "공개증언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불출석해 홍씨에 대한 심정은 이렇지 못했다. 홍씨는 이에 앞서 △검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강씨 가족과 전민련 관계자 앞에서 증언은 신안하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시작 뒤 홍씨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인측에서 보도진의 입장이 허용된다면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증언"도 받아들여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일반 방청객의 방청없이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홍씨가 법정에 나와 공개증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홍씨의 입장을 고려해 보도진 입회 외에 제한적인 공개증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양일부진술면회

수첩에 이복전처남 사살 기록 안한다

유서대필사건 재판이 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가 "공개증언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불출석해 홍씨에 대한 심정은 이렇지 못했다. 홍씨는 이에 앞서 △검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강씨 가족과 전민련 관계자 앞에서 증언은 신안하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시작 뒤 홍씨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인측에서 보도진의 입장이 허용된다면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증언"도 받아들여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일반 방청객의 방청없이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첩글씨」 홍양진술 엿갈려

유서대필 7차공판 "기억없다" "姜씨가 안 썼다"

유서대필사건 재판이 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가 "공개증언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불출석해 홍씨에 대한 심정은 이렇지 못했다. 홍씨는 이에 앞서 △검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강씨 가족과 전민련 관계자 앞에서 증언은 신안하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시작 뒤 홍씨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인측에서 보도진의 입장이 허용된다면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증언"도 받아들여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일반 방청객의 방청없이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서대필사건 재판이 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가 "공개증언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불출석해 홍씨에 대한 심정은 이렇지 못했다. 홍씨는 이에 앞서 △검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강씨 가족과 전민련 관계자 앞에서 증언은 신안하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시작 뒤 홍씨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인측에서 보도진의 입장이 허용된다면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증언"도 받아들여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일반 방청객의 방청없이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홍성은씨 「수첩글씨」 실서 기억안나.姜씨 쓰지않았다

유서대필사건 재판이 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가 "공개증언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불출석해 홍씨에 대한 심정은 이렇지 못했다. 홍씨는 이에 앞서 △검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강씨 가족과 전민련 관계자 앞에서 증언은 신안하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시작 뒤 홍씨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인측에서 보도진의 입장이 허용된다면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증언"도 받아들여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일반 방청객의 방청없이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서대필사건 재판이 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가 "공개증언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열린 5차 공판에 이어 불출석해 홍씨에 대한 심정은 이렇지 못했다. 홍씨는 이에 앞서 △검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강씨 가족과 전민련 관계자 앞에서 증언은 신안하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 시작 뒤 홍씨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변호인측에서 보도진의 입장이 허용된다면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제한적 공개증언"도 받아들여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일반 방청객의 방청없이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7. 11. 9 20764

[1988.6.18-제3공무원법(가)공인가]

제1076호

유서사건 항방가를 '결정적' 증거

강기훈씨 변호인단 새 필적자료 2종 제시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변호인단은 7일 본인자살한 강기훈씨의 유서를 강씨가 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새로운 필적자료 2종을 제시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 필적자료들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어떤 필적보다 확실하게 강씨의 필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자신하고 있어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이날 강씨에 대한 7차공판에서 제시한 자료중 하나는 강씨가 지난 4월초 작성한 자료로서 속초 동우전문대사건에 관해 속초 재판부에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누리한 공책 한 권이다.

변호인단은 이 자료가 당시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익씨의 자서로 강씨 등에 의해 작성됐으며 작성된 뒤 곧바로 서씨에게 건네져 계속 전민련 사무실

토론회 녹취 홍씨도 참여 사실 시인 조작공방 전민련수첩 복사본도 제출

의 서씨 책상 안에 보관돼 왔다고 밝혔다.
이 자료가 주목받는 이유는 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성준(25)씨가 강씨와 함께 녹취작업에 참여했으며 본으로 보아 유서와 동일한 글씨가 홍씨의 글씨와 함께 적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4월5일 강씨 취지방에서 강씨가 홍씨 및 전청대형 간사 장준호씨와 함께 토론회 내용의 녹취정리 작업을 했으며 강씨가 먼저 자신이 녹취한 부분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홍씨는 녹취된 내용을 4쪽 분량으로 적필 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강

김기훈씨 변호인단 새 필적자료 2종 제시

김기훈씨 변호인단 새 필적자료 2종 제시

김기훈씨 변호인단 새 필적자료 2종 제시

아버지. 어머니 -
버니안 입니다.
은 이해하는 일상생활은 생경도
하에게는 여파가 크기가. 영어나
생각합니다. 여지껏 생보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변호인단이 7일 강씨의 필적이라며 새로 제출한 필적(위)과 강씨의 본인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아래).

씨와 함께 정리작업을 했고 제출된 증거에 자신이 정리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홍씨는 강씨가 바로 그날 보여준 필적이라며 변호인단이 제출한 공책필적에 대해 필적은 같아 보이나 글의 백백한 정도 등이 다른 것 같아 강씨가 보여준 글씨인지 단언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한 공책에 홍씨 글씨가 함께 적혀 있고 서준익씨가 이를 건네받은 뒤 강씨가 녹취한 부분 위에 가필한 글씨가 적혀 있어 강씨가 쓴 것이 틀림없으며 서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를 입증키로 했다.
또다른 제시증거자료는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빚고

(이재열 기자)

제1076호

[1988.6.18-제3공무원법(가)공인가]

9. 11. 9

한겨레

홍씨 검찰진술 반복

강기훈씨 7차공판 "수첩필적 강씨것 아니다" 변호인단 '대필' 반박 새 증거 제시

김기훈씨 본인자살사건과 관련해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 대한 7차공판이 7일 서울중앙지법 합의2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강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강씨의 여자친구 홍성준(25)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14면> 이와 함께 강씨의 변호인단은 "강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고 수첩도 조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변호인측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적 및 수첩복사본 2종도 제출했다.

홍씨는 이날 신문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그 진술내용 중 강씨가 강씨 본인 위인 지난 5월10일 자신의 수첩에 '김기훈'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를 적어넣었다는 부

분에 대해서는 "강씨가 이 글씨를 적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며 이를 반복했다.

이 부분은 홍씨 진술 가운데 강씨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강씨가 홍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홍씨의 수첩에 강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마치 강씨가 쓴 것처럼 검찰에서 하위진술하도록 해 검찰의 필적수첩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으며 이는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홍씨는 지난 5월14일 검찰에서의 1차조사에서 이 글씨가 지난 4월말 강씨가 적어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같은달 17일 2차조사에서는 강씨가 적어놓은 것이라고 진술을 반복한 바 있으며 검찰은 이 진술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홍씨는 이날 검찰의 직권신문에서는 "강씨가 적어 넣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이 말의 의미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 "누가 썼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그날 민남에서 강씨가 쓴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했다.

홍씨는 이어 "검찰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강씨가 적었다고 진술한 것은 수첩이 내 핸드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씨가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홍씨는 그러나 스김씨에게서 건네받았던 전민련 수첩과 검찰에 제출된 수첩이 필기구의 색깔과 종류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스김할 출두 전 강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단대 동장인 김아무개씨가 "이런 일에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나머지 검찰진술내용은 대부분 시인했다.

강씨의 가족과 보도진단의 입장이 허용된 채 비공개로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신문에서 홍씨는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가끔씩 웃기도 하는 등 다소 여유있게 답변했으나 몇몇 중요한 대목에서는 대답을 잠시간 지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변호인과 검찰쪽의 추가신문이 계속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신문이 끝난 뒤 지난 4월6일에 홍씨와 강씨 및 전청대형 간부 장준호(25)씨 등 3명이 함께 작성했다는 속초 동우전문대 사태 관련 대담내용이 적힌 공책 1권과, 강씨 수첩이 전민련으로 넘어간 5월8일 당일에 복사된 이 수첩의 전화번호 부분 사본 2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기설씨 새 필적 공개

김기훈씨 8차공판 변호인단, 김씨 채무각서 제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본
신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김기훈(27)씨에
대한 8차 공판이 20일 서울형사
지법 합의2부(재판장 노원욱 부
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민련 인
권위원장 서준식씨 등 변호인단
중원들에게 대한 신문이 진행됐
다.
이날 서씨에 대한 신문에서 변
호인단은 "음력 2월 27일경 한아
무개씨(출판업)로부터 3백만원
을 빌리면서 직접 써준 각서"라며
새로운 필적 1장을 서씨에게 제
시한 뒤 재판부에 냈으며 서씨는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빌
려줬다고 주장하는 한씨가 음력
6월초 명동성당에 찾아와 돈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이 각서를
나에게 주었으나 김씨의 명을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구
속되기 직전에 전민련 관계자에
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이어 변호인단이 지난
7차공판에서 제출한 속초 동우전
문대 사대 관련 과담회 녹취서에
대해 "당시 김씨로부터 연립로
기록된 문건을 받아 결정했으며
수정과 가필을 했다"면서 "법원
에 제출된 문건에 가필된 글씨가
내 급씨가 분명해 김씨가 쓴 것
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도 이에 대해 △유서 대원 공방

각서
음인 김기설은
대담 과담회 녹취서
어떠한 처분도 감사하겠습니다
1991. 2. 13
김기설 씨

아빠지. 어머니 -
미미이요 입니다.
은은 이애이는 인상이 좋다는
하거리는 어디까지 의미가
사랑합니다. 여자 것 사랑!
호호라는 건 해오지 못했지요
- 기설 -

김씨 각서와 유서 김기훈씨 변호인단이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김기설씨의 채무이행각서(왼쪽)와 김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

이 5월부터 시작됐는데도 뒤늦게
녹취서가 제출됐고 △당시 김씨
가 녹취한 부분은 법원에 제출된
문건보다 글씨가 백백했다는, 당
시 녹취에 함께 참여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씨의 진술 등을
들어 제출된 녹취서가 김씨가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송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영(22·여)씨는
"지난 5월20일 김씨 본인 뒤에
있었던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써준 것이라고 밝힌 메모

이 메모지가 전민련에서 조작됐
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동안의 집
합록 주장을 반박했다.
지는 지난 4월 김씨로부터 직접
건네받아 학생회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다가 기자회견 하루 전날
전민련쪽에서 김씨 필적을 갖고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찾아낸 것"
이라며 "당시 메모지 원본을 전
민련에 갖다주기 전에 3-4부를
복사해 놓았으며 이 가운데 1부
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변호인단이 법원
에 제출된 메모지 원본과 검찰수
사 기록에 첨부된 사본을 제시하
자 "두 문건이 똑 같다"고 말해

人權 변호사의 惡手

【서울=연합】인권이
선언된 후에도 인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인권이 가장 취약한
분야는 바로 인권 변호사
의 활동이다. 인권 변호사
는 인권이 침해된 자를 구
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
로는 오히려 인권을 침해
하는 일을 저지른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인권 변호사
가 인권이 침해된 자를 구
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
로는 오히려 인권을 침해
하는 일을 저지른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인권 변호사
가 인권이 침해된 자를 구
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
로는 오히려 인권을 침해
하는 일을 저지른다.



각서
음인 김기설은
대담 과담회 녹취서
어떠한 처분도 감사하겠습니다
1991. 2. 13
김기설 씨

이 메모지가 기자회견 하루 전
날 전민련에서 김씨 필적을 갖고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찾아낸
것"이라며 "당시 메모지 원본
을 전민련에 갖다주기 전에 3-4
부를 복사해 놓았으며 이 가운데
1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
다.
이씨는 이어 변호인단이 법원
에 제출된 메모지 원본과 검찰수
사 기록에 첨부된 사본을 제시하
자 "두 문건이 똑 같으며 법원에
제출된 원본은 본인이 김씨로부
터 건네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말해 이 메모지가 전민련에서 조
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동안
의 집합록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설씨 새 필적 제시

김기훈씨공판 서준식씨 "유서글씨와 같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본
신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이
단체 총무부장 김기훈(27)씨에
대한 8차 공판이 20일 서울형사
지법 합의2부(재판장 노원욱 부
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민련 인
권위원장 서준식씨 등 변호인
중원들에게 대한 신문이 진행됐
다.
이날 서씨에 대한 신문에서 변
호인단은 "음력 2월 27일경 한아
무개씨(출판업)로부터 3백만원
을 빌리면서 직접 써준 각서"라며
새로운 필적 1장을 서씨에게 제
시한 뒤 재판부에 냈으며 서씨는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돈을 빌

려줬다고 주장하는 한씨가 음력
6월초 명동성당에 찾아와 돈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이 각서를
나에게 주었으나 김씨의 명을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구
속되기 직전에 전민련 관계자에
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또 조작시비가 일고 있
는 김씨의 전민련수첩에 대해 "김
씨가 숨지기 전 수첩에 일부내용
을 적어놓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으며 일정 등 내용이 대부분
김씨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조작
된 것일 수 없다"며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송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영(22·여)씨는
"지난 5월20일 김씨 본인 뒤에
있었던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써준 것이라고 밝힌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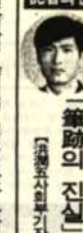
「유서머필」이틀째 法廷공방

황씨 10차 공판 27일이어 最長 15시간 진행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법원에서 10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日本人 遺族의 遺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에 참여한 변호사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정 일부착오 필적판단에 영향없어” 일본감정가, 검찰 반박

감기훈씨 10차 공판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은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은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日증인의 불확실한 진술

일본감정가의 진술이 검찰의 반박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필적 공방 심리 마무리- 1차 심판 '논외' 판결만 남았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이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國科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책관부 채택 여부가 최대 관건 수합 조차해 정황 증거도 논란

국과학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유서머필의 유서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감기훈씨의 유서 공판이 15시간에 달하는 최장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국, 관련 6공최대 법정공방

김기훈 유서 논란

한겨레가 보도한 유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훈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의 주인공인 김기훈.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姜基勳씨 7년 구형

강기훈씨 7년 구형 "재야도덕성 훼손시키려 사건 조작" 최후진술

본인자살한 김기훈씨의 유서를 대법원 형사로 구속기소된 전인원 총무부장 김기훈(27)에게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건 발생 6개월, 제1회 4개월22일 만에 구형이 내려졌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후진술을 한 김기훈은 "재야도덕성 훼손시키려 사건 조작"을 인정했다.

전인원은 "김기훈은 '국립과학사연구소'의 직원인 김기훈의 유서를 대법원 형사로 구속기소된 전인원 총무부장 김기훈(27)에게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전인원 사퇴부장이었던 김기훈씨의 자살장소 형사로 기소된 김기훈(27)에게 7년 구형됐다. (연재실 기자)

강기훈씨 '재판' 어떻게 될까

본인자살한 김기훈씨의 유서를 대법원 형사로 구속기소된 전인원 총무부장 김기훈(27)에게 대해 징역 7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재판부 국과수감정 인정여부 열쇠

재야비조계 "증거 불확실맨 피고이의 우선 고려"

재판부 국과수감정 인정여부 열쇠는 증거 불확실맨 피고이의 우선 고려에 달려 있다. 재야비조계는 "증거 불확실맨 피고이의 우선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 국과수감정 인정여부 열쇠는 증거 불확실맨 피고이의 우선 고려에 달려 있다. 재야비조계는 "증거 불확실맨 피고이의 우선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유서代筆 - 자살방조 인정 姜基勳씨 징역3년 선고

国科搜 감정인공정 사법법 焚身 판역정도 불분명해 減刑



○송문에서 유서대필 혐의로 기소된 姜基勳씨(右)가 20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본지 1면 참조>

【서울 20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법 1부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은 유서대필 혐의로 기소된 姜基勳(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서대필을 통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법법 제17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에 처할 판역 정도가 불분명해 징역으로 감형했다.

고심끝 国科搜공신력 인정

진술·정황 외식 불명확속 "斷案" 상급법원 관심

【서울 20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법 1부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은 유서대필 혐의로 기소된 姜基勳(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서대필을 통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법법 제17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에 처할 판역 정도가 불분명해 징역으로 감형했다.

「절대眞實」 못박힌 「次善」

유서代筆 有罪판결 배심

【서울 20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법 1부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은 유서대필 혐의로 기소된 姜基勳(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서대필을 통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법법 제17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에 처할 판역 정도가 불분명해 징역으로 감형했다.

国科搜·洪양진술 신뢰

재판부도 증거 인정 갈등... 불씨는 근역선

【서울 20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법 1부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은 유서대필 혐의로 기소된 姜基勳(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서대필을 통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법법 제17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에 처할 판역 정도가 불분명해 징역으로 감형했다.

유서「代筆」인정

서울地法「자살방조」죄중 姜基勳씨에 3년선고



姜基勳씨

【서울 20일 특파원 보도】 서울지법 1부 형사부 재판장 김기현은 유서대필 혐의로 기소된 姜基勳(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서대필을 통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법법 제17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에 처할 판역 정도가 불분명해 징역으로 감형했다.

강기훈씨 징역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유서대필 인정 불가피" 국과수 필적감정 모두 수용

본신자살한 전민원 사회부장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원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6부(재판장 노현욱 부장판사)는 20일 오전에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자살장조리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해 징역3년, 사회봉사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홍성호씨의 진술 등 현재 나타나 있는 증거에 따라 강씨의 유서대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유서대필의 인정이 재판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 이외의 증인들의 증언은 국과수 감정을 채택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을 단행하지 않고 유서를 대필한 것은 일종의 살인행위로 인정돼 처벌이 타당하다"며 징역·일시·강소 등이 합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사건은 본신자살 발생 7개월13일 만에 유서는 대필된 것으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징역1년, 자격정지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공판, 변호인단은 유죄인정해 불복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의 유서대필이 인정되는 판단의 근거로 △국과수가 필적의 일치율이 초신경 감동형(52)이 가장 감정의 진위자라는 필 △전민원에서 김씨의 필적과 제출한 유서의 조차 △홍성호씨 진술 △유서의 필적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김기철씨의 필적을 동일한 것으로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인 오니시 요시로(71)의 감정은 오니시가 한글을 전혀 모르고 사본으로 감동했으며 한글 자로 수를 잘못 세는 등 실수가 있어 감정의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정에는 강씨의 어머니 김태경(57)씨 등 가족과 전민원 공무원장 신장규씨 등 제자인 사, 학생 등 1백여명이 재판관을

지켜보았으며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에 심한 야유를 보였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확신이 없다'면서 국과수 감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피의자 유죄가 부족한 결과"라며 "1심에서 하는 거짓이 '진실'을 이루었으나 '거짓'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강기훈씨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애초 유서대필이라는 사건 자체가 강경대처 대상사건 이후의 5월정국을 무마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만든 정치조작극"이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전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웃음거리 판결"이라며 강씨의 무죄처분을 촉구했다.

사법부 정권유지 도구로 전세계의 웃음거리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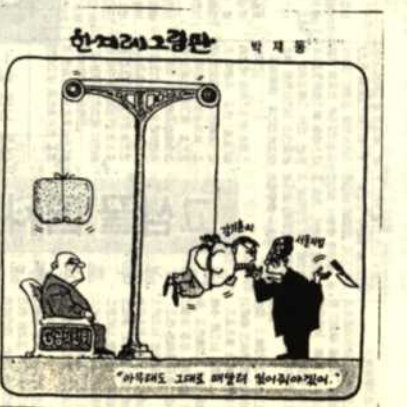
전민원·민가합 성명

전국민원민주운동연합(전민원)은 20일 강기훈씨 선고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권유지의 도구가 되어 왔던 사법부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공판으로 합세했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전민원은 또 "집행 등 국가기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이 짓밟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이라며 "강씨의 결백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는 이날 강기훈씨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애초 유서대필이라는 사건 자체가 강경대처 대상사건 이후의 5월정국을 무마하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만든 정치조작극"이라고 "상식에 어긋나는 '유서대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전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웃음거리 판결"이라며 강씨의 무죄처분을 촉구했다.



불확실한 심증으로 "유죄" 흔들리는 사법부

강기훈씨 '실형선고' 파문

김기철씨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원 총무부장 강기훈(27)씨에게 20일 대법원 합의26부(재판장 노현욱 부장판사)는 20일 오전에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자살장조리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해 징역3년, 사회봉사1년을 선고했다.

'의심갈땐 피고이익' 상식 외면 "운동권 믿기어렵다" 편견 노출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으로 확대될 조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기철씨의 유서대필이 인정되는 판단의 근거로 △국과수가 필적의 일치율이 초신경 감동형(52)이 가장 감정의 진위자라는 필 △전민원에서 김씨의 필적과 제출한 유서의 조차 △홍성호씨 진술 △유서의 필적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김기철씨의 필적을 동일한 것으로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인 오니시 요시로(71)의 감정은 오니시가 한글을 전혀 모르고 사본으로 감동했으며 한글 자로 수를 잘못 세는 등 실수가 있어 감정의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확정된 강기훈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기훈씨 유죄판결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심증형식'이 아닌 '실증형식'을 내리겠다는 당부재판장인 노현욱 서울형사지법 합의26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유죄를 선고했

는 것"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강기훈씨 유죄판결을 흔들리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기훈씨 유죄판결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심증형식'이 아닌 '실증형식'을 내리겠다는 당부재판장인 노현욱 서울형사지법 합의26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유죄를 선고했

는 것"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강기훈씨 유죄판결을 흔들리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기훈씨 유죄판결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심증형식'이 아닌 '실증형식'을 내리겠다는 당부재판장인 노현욱 서울형사지법 합의26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유죄를 선고했

는 것"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강기훈씨 유죄판결을 흔들리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기훈씨 유죄판결은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심증형식'이 아닌 '실증형식'을 내리겠다는 당부재판장인 노현욱 서울형사지법 합의26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유죄를 선고했

투시경

20일은 무슨 특별한 날이었는지 서울 시내를 순회하는 투시경의 모습은 유쾌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투시경은 이날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투시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시경은 이날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투시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시경은 이날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투시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초동 법원의 '몰아치기'

표적인 시국사범에 대한 재판이 국경하게 될것이다. 모란정(사범)으로는 5명이 있고 권태호(사범)도 있다. 권태호는 시국사범에 대한 재판이 국경하게 될것이다. 모란정(사범)으로는 5명이 있고 권태호(사범)도 있다. 권태호는 시국사범에 대한 재판이 국경하게 될것이다.

강기훈씨 선고공판정 이모저모

확정하다 일수없는 의미

○ 재판장인 노원욱 부장판사는 이날 20분가량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판결요지를 낭독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씨의 강기훈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사공 고개만 숙인 채 무거운 표정...

법정에 들어 올 때부터 줄곧 침묵을 지키던 강씨는 재판장이 판결...

문을 남쪽 끝에 유죄임을 밝히고 "정역3년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다"는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를 감았다가는 듯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퇴장하기 위해 출구쪽으로 향했다.

강씨는 그러나 몇 발짝 옮기다 말고 "재판장"하고 외치며 되돌아가 피고인 석대를 두손으로 움켜잡으며 퇴장하려던 재판장

을 불러세운 뒤 알 수 없는 내용의 의미들을 질었으나 고도판들에 의해 문장 끊어났다.

"조작극 승리로 기록하라"

○ 강씨의 가족과 친인척은 신상관 외장 등 제인사를 비롯, 행방이 검찰의 입장을 약화시킨 것으로 받아들인 듯 "정역3년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 강씨 외면한채 시종 무거운 표정. 방청객들 판결문낭독되자 유죄직감 '슬렁'

검찰, 선고항에 불만

○ 검찰은 강기훈씨의 유죄가 선고되자 '유죄는 당연하다'는 안도의 반응과 함께 재판부의 양쪽에 큰 불만을 표시.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서울지검 형사부 장신욱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사실방조에 대해 유죄 선고할 것은 이미 예견했다"면서도 구형량의 반도 안되는

행방이 검찰의 입장을 약화시킨 것으로 받아들인 듯 "정역3년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씨 어머니 망연자실

○ 이날 공판에는 강씨의 어머니 권태경(57)씨, 동생 기천(24·포항공대 박사과정)씨 등 가족들이 대부분 나와 방청했으나 아버지 강태열씨는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법정에 오지 못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재판사직 직전 어머니 권씨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할 수 없지만 유죄대립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의 태도로 볼 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조초해 했다.

판결문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유죄가 확실시되자 권씨는 "세상에" "말도 안돼"라는 말을 되뇌이다가 선고되었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3분여동안 자리에 앉아있었다.

많은 부분 조작된 흔적이 있고 서술적, 이명비 등의 증언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이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같다는 것도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의 감정결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써주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진술을 반복했다. 이 부분은 홍이 피고인에 대한 의리상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 2차진술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재판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피판적으로 절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약하다고 판단돼 배척할 수밖에 없다.

대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제제타도를 목적으로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지만 대필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돼 정역3년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다.

홍성은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홍성은 검찰조서시 1차진술에서 자신의 수침에 씌운 김기철이란 이름과 전화번호(유서와 필적이 같은)는 김기철이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2차진술시 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적어놓은 것이라고 반복했고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홍성은 다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증인 홍성은 김기철로부터 건네받은 수침과 친인척이 제출한 김의 수침과는 필기도구와 수침의 내용에 있어 서로 달라 보인다는 진술을 했으므로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수침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변호인이 김기철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상당 타사상 장년학 후의 방명록 등 13건의 자료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살방조에 대해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법하므로 공소장에 "일 자살방조" 서울이하 불상지에서"라고 기재했다라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국과수의 감정이 검찰의 의도에 따라 감정한 것으로 재판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감정에 필적감정 과정이 남용할 수 있게 설명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의도대로 감정한 것은 증거가 없고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 권위자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필적감정이 새삼

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친인척이 제출한 김기철의 친민원 수침이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감정에 보이듯 수침에서 떨어진 전화번호 부 기재한 3개의 수침의 필취선

강기훈씨 판결문 요지

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증인 홍성은 김기철로부터 건네받은 수침과 친인척이 제출한 김의 수침과는 필기도구와 수침의 내용에 있어 서로 달라 보인다는 진술을 했으므로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수침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변호인이 김기철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상당 타사상 장년학 후의 방명록 등 13건의 자료는

많은 부분 조작된 흔적이 있고 서술적, 이명비 등의 증언도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이 필적이 유서의 필적과 같다는 것도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의 감정결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써주지 않은 것이 확실하며 진술을 반복했다. 이 부분은 홍이 피고인에 대한 의리상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 2차진술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재판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피판적으로 절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약하다고 판단돼 배척할 수밖에 없다.

대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제제타도를 목적으로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지만 대필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돼 정역3년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한다.

홍성은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 홍성은 검찰조서시 1차진술에서 자신의 수침에 씌운 김기철이란 이름과 전화번호(유서와 필적이 같은)는 김기철이 직접 적었다고 진술했다 2차진술시 는 피고인이 장난삼아 적어놓은 것이라고 반복했고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홍성은 다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증인 홍성은 김기철로부터 건네받은 수침과 친인척이 제출한 김의 수침과는 필기도구와 수침의 내용에 있어 서로 달라 보인다는 진술을 했으므로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수침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변호인이 김기철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상당 타사상 장년학 후의 방명록 등 13건의 자료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자살방조에 대해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법하므로 공소장에 "일 자살방조" 서울이하 불상지에서"라고 기재했다라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국과수의 감정이 검찰의 의도에 따라 감정한 것으로 재판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감정에 필적감정 과정이 남용할 수 있게 설명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의도대로 감정한 것은 증거가 없고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 권위자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필적감정이 새삼

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친인척이 제출한 김기철의 친민원 수침이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감정에 보이듯 수침에서 떨어진 전화번호 부 기재한 3개의 수침의 필취선

강기훈씨 판결문 요지

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증인 홍성은 김기철로부터 건네받은 수침과 친인척이 제출한 김의 수침과는 필기도구와 수침의 내용에 있어 서로 달라 보인다는 진술을 했으므로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수침은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변호인이 김기철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상당 타사상 장년학 후의 방명록 등 13건의 자료는

사설

'구름잡는 공소장' 손들어준 재판

확증도 없이 '유서 주었다면 유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가 어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게 내린 유죄선고는 "공정한 판결"과는 거리가 멀고 권력에 대한 굴복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씨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서울 서강대에서 지난 5월8일 분신자살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 혐의로 자살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김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한 '사실'을 제시했다. 20대의 한 청년간부가 동료들 죽음을 몰아넣으려고 유서까지 써주었다면 전민련이라는 단체는 도덕성을 저버린 집단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재야운동의 전국 조직인 전민련은 그 주장을 반박하는 많은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비는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노원욱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합의25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재판부는 이성 과 양심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법원의 임무를 포기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공소장의 구름잡는 듯한 '주장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정신을 저버렸다. 법원은 왜 있으며, 재판은 무엇을 위해 하는가? 국가의 법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용정하는 사법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아흔아홉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고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법원은 그래서 국가권력이 '법질서'라는 명분으로 저지를 수 있는 폭력과 인권유린에서 피고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합의25부의 판결문은 권투경기의 심판이 한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경기규칙을 깰고 무시할 때 드러내는 자세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자살을 결심한 자에게 유서를 주었다면 정신적·무형적 방법에 의하여 자살하려는 자의 자살 수

행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지가 결정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판결문은 강기훈씨가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쓰지 않고 '유서를 주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기대고 있다. 판결이 가정법을 기초로 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원의 기본상식이다.

판결문은 또 유서의 필적 감정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를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권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감정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강기훈씨 자신과 변호인단이 제시한 반대증거들은 모조리 부정하고 공권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기관의 감정결과에만 신빙성을 둔 것이다.

판결문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재판부가 온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철씨의 여자친구 홍성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그 애인인 이모 양에 대한 의리상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반복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결국 검찰 2회 진술이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한다."

홍성은씨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오랜기간 수사기관의 '강제보호'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판결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검찰에서 강압적 조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짙다. 이런 개연성을 배제하더라도 홍씨는 7차공판에서 "강기훈씨가 김기철씨의 수침에 글씨를 써넣지 않았음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는가?

보도를 보면 재판부는 지난 5일 심리를 종결하고서도 "확실한 심증을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초조해했다고 한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커녕 심증도 굳히지 못했으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미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의 의무를 포기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이 판결은 '상식과 진실의 패배'라고 한 변호인단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25부가 땅에 떨어진 법원의 신뢰를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기 바란다.

美暴動시 3년선고

서울地法 자살방조·保安法 적용

【서울 9월 12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은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 13403호로 1949년 9월 12일 서울에서 발생한 '美暴動' 시 3년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서울지방법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로, 자살방조 및 보안법 적용을 인정했다.

판결은 서울지방법 13403호로 1949년 9월 12일 서울에서 발생한 '美暴動' 시 3년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서울지방법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로, 자살방조 및 보안법 적용을 인정했다.

國科搜 감정결과 증거로 인정

美暴動피고인 유죄선고 의미

【서울 9월 12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은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발생한 '美暴動' 시 3년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서울지방법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로, 자살방조 및 보안법 적용을 인정했다.

판결은 서울지방법 13403호로 1949년 9월 12일 서울에서 발생한 '美暴動' 시 3년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서울지방법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로, 자살방조 및 보안법 적용을 인정했다.

어느 쪽도 결정적 증거 없어 고심

수첩 조작 등 채택·자살방조도 廣義 해석

변호인단의 심판면 無罪·법안들의 반발

【서울 9월 12일 특파원 특보】 서울지방법은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발생한 '美暴動' 시 3년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서울지방법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로, 자살방조 및 보안법 적용을 인정했다.

판결은 서울지방법 13403호로 1949년 9월 12일 서울에서 발생한 '美暴動' 시 3년선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서울지방법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로, 자살방조 및 보안법 적용을 인정했다.

시론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이...

제2, 제3 강기훈 만들어 낼 사법부를 고발한다

9.12.22 27기17 / 1면



서준식

의 중언조치도 목숨해버릴 것이다. 재판관은 한사람도 아닌 세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불쌍적인 판결이 과연 재판관 세 사람의 일치된 의견이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함의로써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합리재판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기훈은 결백하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단언하는 필자는 명동성당에서 김철을 상대하는 '유서대립 공방'의 신봉자였다. 김철은 철학신세를 지게 되었다. 강기훈이 김철을 자진출수했던 무렵부터 '유서대립이 끝날 무렵까지 상동구치소에 '고의 격리'되어 있었던 필자의 권위의 힘에 의해 갈내 병의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끔찍한 가정은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의미할 뿐이라고 강기훈의 의상은 그런 절망의 깊은 밑바닥에서 치민 절규였을 것이다.

강기훈에 대한 재판은 원래 강기훈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의 수준을 심판하는 재판이었다. 그리고 진실 재판부는 결국 거짓과 비양심이 관음치는 우리 사회의 안락한 풍토를 다시 한번 격리하게 되리

것보다야 하는 우리의 이상들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우리의 현실 수백에 있을 것이다. 참담함은 어디로 실망은 없다. 과정도 없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언제나 많은 함과 그 함을 흔들 뒤에 승리하는 법이다. 강기훈은 그의 최후진술에서 좌절의 시간에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갖겠다고 했다. 정의와 진실은 고난과 역사 속에서 셋째처럼 표출되듯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희망인 것이다. 상고심에서 다시 사악한 유죄선고 내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희망, 김철이나 사법부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희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예일 출판사는 드레퓌스를 옹호하여 왔다. ...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평균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 저에게 끌리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속죄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중기는 말이 끝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오히려 다행이었는데도 모른다. 우리 사회 양심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다시 견장을 수 없이 팽배하면서 결국은 사법부를 비방으로 돌릴 것이다.

자진출수 상태에서 '김철이 절권의 허수아인'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재판에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중언조치는 중언조치는 중언조치는 '이러한 재판은 필사적'이라는 것이 아닌, 이제는 김철과 '공방관계'에 서게 된 진실 재판부까지도 김철과 함께 거듭나게 하기 위한 중언조치는 자라와 궁지를 닦아주는 것보다야 하는 우리의 이상들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우리의 현실 수백에 있을 것이다. 참담함은 어디로 실망은 없다. 과정도 없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언제나 많은 함과 그 함을 흔들 뒤에 승리하는 법이다. 강기훈은 그의 최후진술에서 좌절의 시간에도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갖겠다고 했다. 정의와 진실은 고난과 역사 속에서 셋째처럼 표출되듯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희망인 것이다. 상고심에서 다시 사악한 유죄선고 내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희망, 김철이나 사법부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희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중기는 말이 끝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오히려 다행이었는데도 모른다. 우리 사회 양심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다시 견장을 수 없이 팽배하면서 결국은 사법부를 비방으로 돌릴 것이다.

자진출수 상태에서 '김철이 절권의 허수아인'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재판에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중언조치는 중언조치는 중언조치는 '이러한 재판은 필사적'이라는 것이 아닌, 이제는 김철과 '공방관계'에 서게 된 진실 재판부까지도 김철과 함께 거듭나게 하기 위한 중언조치는 자라와 궁지를 닦아주는 것보다야 하는 우리의 이상들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우리의 현실 수백에 있을 것이다. 참담함은 어디로 실망은 없다. 과정도 없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언제나 많은 함과 그 함을 흔들 뒤에 승리하는 법이다.

【전인환 인권위원장】

91. 12. 22. B. 한겨레

강기훈씨 담당 김창국 변호사

인터뷰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판정패당한 느낌입니다. 다만 이번 재판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 아닌 검찰 등 공권력과 재야 운동권의 명예와 도덕성이 걸린 재판으로 비친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로서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분신자살한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수 등을 통해 감정하기를 원했는데 변호인쪽이 거부했다고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과수는 이번 사건에 있어 검찰과 운명을 함께하게 됐다.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국과수에 또다시 감정을 맡긴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과수가 아닌 사실 감정인은 어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한때 감정을 맡기기위해 감정신청서까지 만든 적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한 감정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포기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자신은 있는지. 또 항소심의

“재판부만 공정하다면 무죄 자신”

자료보충·많은 증인 신청해 항소하겠다
우세한 싸움 판정패...국과수·검찰 한편

강기훈(27)씨에게 유죄가 선고된 다음날인 21일 17명으로 구성된 강씨의 변호인단을 이끈 김창국(51) 변호사는 다시 시작하는 기본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죄를 예상했는지.”

“그동안 재판부의 재판진행 태도로 볼 때 직감했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하게 검찰주장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재판부가 재야운동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유서를 대신 써주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서로 짜고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데 놀랐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의 검찰쪽 직접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뿐인데 이에 대한 우리쪽의 반핵증거는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의 감정서였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과수와 일본인 감정인 사이의 명예와 권위가 걸린 싸움처럼 비쳤다. 재판부로서는 국과수가 공신력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현실여건과 함께 국가위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쪽의 감정서를 비교해 보라. 어느쪽이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감정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필적자료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를 국

대핵은.

“재판부만 공정하다면 반드시 이기리라고 본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루기 위해 분신 당시의 정황과 관련해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겠다. 당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면 김씨의 유서가 분신 직전 쓰였으며 강씨가 대신 써 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친 뒤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다”면서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담당 검사들과 재판부도 내심으로 강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열 기자>

[10] 1991년 12월 28일(토요일)

한겨레

국민기자식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 등을 기다립니다. (보내 주시는 원고엔 연락처번호를 꼭 적어주시시오). 보내실곳 우편번호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 6-25 편집국 여론채무부.

유서사건 판결 상식벗어난 허구

피고이익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나는 이렇게 출신이라서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은 상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그 판결문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유리한 필치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여러번 경험했다.

유서대필 사건에서 생략이 되는 부분은 ‘강기훈씨가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검찰은 유서대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김기철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의 진술을 들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기철씨의 여러가지 필적과 사실기관의 필적감정, 서순석씨 등의 증언과 홍성은씨의 법정증언을 들고 있다.

먼저 가장 논란이 심했던 필적감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설사 변호인쪽에 호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유보적일 수밖에 없

다는 것이 일반시민의 생각일 것이다. 단순히 수학적으로 따져서 검찰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50% 이상의 확실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홍성은씨의 증언이다. 과연 검찰 앞에서의 진술과 재판정에서의 증언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이었는가. 홍성은씨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보통 시민이라면 아마도 법정에서의 증언이 더 진실에 가까우리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검찰쪽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여기에도 50%의 확률을 부여해보자.

그렇다하더라도 위 두가지 사실이 모두 검찰 주장과 일치할 확률은 25%를 넘을 수 없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은 당연히 무죄가 되리라는 것

은 그야말로 상식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을 전공하고, 어려운 사법시험도 통과한 학식있는 법관이, 더구나 3명이 모여서 내린 판결이 상식을 뛰어넘을까.

유서사건 판결 사법부 역할 포기
진실 밝혀지고 거짓 무릎 꿇을 것

은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김기철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쪽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남터사살 청년회가 보관하다가 제출한 방명록도 많은 부분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했다. 또 서순석, 이영미씨의 증언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한마디로 피고인쪽의 주장은 전혀 들어볼 가치도 없다는 식의 태도이다.

도대체 피고인과 관계가 전혀 없는 증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있을 수 있는가? 재판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검찰쪽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태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법정의 일시·장소도 명시하지 못한 공소내용을 전면 인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검찰쪽 주장을 부인한 홍성은씨의 증언을 무시한 채 홍씨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선택 인정하는 ‘지레’를 발휘했다.

편사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묻고 들은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비공개 장소인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의 논리이다. 또 재판부

재판부는 검찰의 필적감정사를 “한글 필적감정 최고의 권위자로서 신뢰”하였고 피고인쪽 증언은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홍성은씨의 법정 증언은 “의리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정에 필요한 기록은 문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과학적 치밀성이 아니겠는가. 권 윤 순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잠미원아파트 가동 200호>

는 어찌 ‘검찰과의 관계’가 깊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만을 증거로 받아들일지는?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다. 판결에는 주관적 심증이나 정황에 따른 추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사실 규명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기훈씨의 건부를 본다.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거짓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김철 수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80-477>

社 説

國科搜 不正의혹 벗겨져야
유리하게 일관한 다른 증거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김기설씨 혐의소설 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1154호 (1986)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정인사) 한겨레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수사 불가피

‘돈받고 허위감정 폭로’ 파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김기설씨 유서관련 불신 커질듯
문제된 김씨가 필적감정 장본인
당사자는 전면 부인 검찰서 진상 밝혀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과수 감정’ 법원서 첫 불인정

서울 형사지법 임대차계약 무고혐의 무죄선고
무조건 채택 관례 깨...증거능력 상실

법원은 이씨 “국과수라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12월 11일 (수요일) [15]
미주알
위나름수업생 개개수
이해정정수사위서작성법
더러울수가 없어요
대머리하고 우물통이

2-1-2
검찰, 거짓감정 수사
국과수 분석실 간부·사실감정인 조사

검찰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직원과 거짓감정 의혹...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한겨레신문
김기설씨 유서관련
김기설씨의 대머리가
국과수 감실장 수회 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11월 11일...

검찰 국과수 수사가 남긴 문제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직원의 거짓감정 의혹사건 수사를 서둘러 끝냈다. 17일 밤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3)씨 구속을 마지막으로 김씨와 사실감정인 3명, 사건의뢰인 3명 등 모두 7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 수사는 △국과수 직원이 사실감정인과 의뢰인들로부터 감정을 몰리라고 뇌물을 받았다 △그러나 국과수 직원의 거짓감정 여부를 밝혀지지 않았다는 선에서 종국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기는커녕, 자칫하면 검찰의 공신력까지 떨어뜨릴 공산마저 커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사건의 뇌물 비리로 규정해 국과수 문서감정의 구조적 비리를 드러내줄 거짓감정 여부를 밝혀내는 데까지는 걸린



'거짓 감정' 못밝히고 마무리 급급

뇌물비리로 규정...공신력 실추 우려 문서분석실 직원 관련조사 호지부지

하지 못했다. 검찰은 △국과수 문서분석실의 감정 절차 분석 △문서분석실 소속 감정결과에 대한 과학수사 운영에서의 재감정 △문서분석실 사진 소송서류의 정밀분석 등으로 실시했으나 대검 과학수사운영과의 감정결과가 김씨의 감정과 동일하게 나오는 등 허위감정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2건 의뢰인 이세용(41)씨 관련 3건, 양승호(44·건수업)씨 관련 1건, 이기덕(여·수배중)씨 관련 1건 등 모두 5건의 사건기록부에 대한 정밀 검토 결과 이세용씨 관련 송사 3건은 이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나머지 2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뇌물이 관 허위감정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밝혀진 뇌물 액수가 수십만~수백만원으로, 일반적인 뇌물사태를 감안해볼 때 감정인이 직업적 생명을 걸고 허위감정을 해준 뒤 받은 대가치고는 너무 소액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실제로 김씨가 순수한 '떡값'으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위감정 대가로 받은 귀중한 뇌물권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 검찰의 수사외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이 김씨 외에 다른 국과수 문서분석실 직원의 비리 사실을 밝혀지 못한 점도 개운치 않은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과수 문서분석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문서의 감정 의뢰를 받으면 주일 감정원을 선정해 감정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면합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날 소환돼 조사받은 국과수 직원들은 "과 감정인이 해당받은 감정 건이 많아 실제 다른 감정인이 맡은 사건에 대한 합의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감정과 관련, 뇌물을 받았을 경우 내부적으로 뇌물을 배분하거나 또는 '부정감정'을 의뢰받은 사안을 서로 묵인해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검찰은 17일 최심(44)씨 등 국과수 직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비리 관련부분을 조사했으나 이들에 대한 예규제와 추적은 1명에 그쳤을뿐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형식적인 수사 마무리 절차를 위한 과정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이길우 기자)

한겨레 논단

김중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을 받았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 돈을 주었다. 그 눈치가 1천몇십만원. 그러나 거짓감정 따위의 검은 그림자는 전혀 끼어들지 않았다. 참으로 순수한 사람들이다. 인정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것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순수한 거래'에 단죄의 칼날을 뽑아둔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 단죄의 칼날이 인륜을 자르는 반인륜의 비수로까지 비쳐진다. 우리의 검찰은 "법은 사랑처럼 / 어디에 왜 있는지 모르는 것 / 사랑처럼 억지로는 못하고

거 준다. 더 큰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큰 불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경우처럼 정보제공자의 연소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마저 저록히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자 미국의 제도를 원용했던 전례를 떠올려보는 것은 더더구나 민망한 일이다.

다시 오든은 법을 노래한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법은 우리의 운명 /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법은 우리의 국가"라고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저 검찰의 숨씨도 과연 우리의 운명인가, 과연 우리의 국가인가.

암담하고 또 암담하다. 한낮에 등불을 밝히고 다녀도, 나의 순진한 감회에 동조해주는 이웃은 없다. 저 증인의 구속을 보라는 호풍 속에서 '못매단 얻어맞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도 짓밟히는 저 김기철씨의 죽음을 보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떨어진 감정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저 강기훈씨의 고난을 보라!"는 합성이 은음을 강타한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역시 순진도 유죄이다. 이 땅의 오늘을 돌아다보라. 한 폭력배의 두목을 경찰의 간부가 연호한다. 도주를 지령한다. 국가 안전기획부의 종사원이 한 폭력배 두목의 안전을 지켜준다. 통관을 밀어준다. 국토방위의 신성을 자랑하는 군의 장교가 한 폭력배 두목을 판

법은 죽어버렸다!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라는 W.H. 오든의 시를 모르는 것인가.

이상이 검찰이 말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 구속의 문맥이며, 또한 그의 구속에 불여졌던 나의 순진한 감회이다. 정작 아무런 '조건'과 '보상'의 거래가 없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후원금'쯤으로나 자리매김될 인정의 교류를, 굳이 단죄해야만 하는가. 설명 법의 칼날을 뽑아들더라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정도가 일맞은 것은 아니었던가. 혹시 '중여죄'라는 게 있다면 그중으로 다스리는 편이 좀더 온당했을 법도 하다.

답답한 가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실없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 범용가도 만나보게 하고 교수님도 만나보게 한다. 마침내는 돌도 지나지 않은 손주놈이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진다. 왜 그토록 가상한 '미풍양속'을 구태여 자르려 드는가.

그러나 나의 순진한 감회는 거짓감정을 고발한 한 증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내 무너지고 만다.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지고, 따라서 답답한 가슴은 더욱 답답해지고 만다. 이런 때, 가당치 않게도 미국의 사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민망하다. 그들은 설명 범죄의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의 내막을 증언하면 면죄부를 안

병한다. 동양화 한폭을 건네받는다. 교도관들도 그 엄호의 전열에서 빠져나오지는 않는다. 극진한 보살핌을 극진하게도 베푼다.

그 모두가 이 땅의 법을 지킨다는 한무리의 작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국가인가. 그렇다! 오늘의 권력을 '바꾸어내지 못하는 한, 이 참담한 심경이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국가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배세력이 그렇게도 '보수'하고자 하는 현실의 가치이다.

그들에게 거짓감정을 밝혀내라고 핏대를 올려 본들 부절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속죄와는 무관한 무리이다. 그들에게 안기부와 군, 경찰과 교도관의 불법을 단죄하라고 핏대를 올려 본들 헛되고도 또한 헛된 짓일 뿐이다.

때문에 오든은 다시 법을 노래한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 법은 죽어버렸다"고 그렇다. 허위감정의 하늘 아래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죽어버렸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법을 사랑처럼, 우리의 운명으로 되살려내지 않아도 옳은가. 법을 사랑처럼, 우리의 국가로 회생시키지 않고도, 우리의 삶은 사랑일 수 있는가.

<언론인>

이 땅의 사람들

강기훈씨 어머니 권태평 집사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 '유서사건 강기훈씨의 무죄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함태훈 신부) 결성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현관에서는 다소 سنگ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중년여인에게 물대어 '세례'가 밧뵈었다.

어머니 권태평씨(58·무학교의 집사)는 요즘 그나마 '살맛'이 난다. 마치 "어두컴컴한 밑에서 회부연 빛을 발한 기분"이라는 권씨는 "진실은 아무리 감추어도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이라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굳은 의지를 다진다.

은 상심이었던다. 물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언론의 공이 컸지만, 권씨도 예초인 예노 어머니를처럼 자기 자신이 학생운동에 뛰어들 것이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도 이해이 불긴 했지만 '유서사건'으로 가장 건대기 힘들었던 것은 "기훈이가 명동성당에서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한달 기간 동안 변호도 제대로 안 봤을 때"라고 말한다.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어요”

국과수 허위감정 폭로돼 아들 무죄석방 희망커져



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번 국과수 비리 파장은 강제 사건을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단초'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후로 권씨가 민정당원수원 정거사건으로 검찰에서 구치소로 이감되어 갈 뻔 하지 자신이 죽으려 하는 것만 같아 실음에 빠질까 눈물을 '점' 쏟아내기도 했다.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알려주지 않던 인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아들을 보면서 권씨는 말속으로 굳게 다짐한 것이 하나 있다. '유서대필사건'이 파헤쳐지면 '유서대필사건'이 파헤쳐지면 '유서대필사건'이 파헤쳐지면...

부정한 정권·무분별한 언론이 '대필' 사건날아 매일 면회다녀... 신앙에세이집 밤새워 읽기도 권씨는 아들, 동료를 죽임으로 몰아넣기 위해 유서까지 대신 써주는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몰고들면 언제 '신문왕자' 한자 한자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간내수면서 국과수 예기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죄석방 움직임 등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현재 비어 있는 아들자식 방을 쓰고 있는 권씨는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산란해있던 미우아 아이의 신앙에세이집을 밤을 꼬박 새우며 읽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던 하에 최근 국과수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강제에 대한 무죄석방운동 집계를 위한 '학수'가 여기 저기서 내비치자 권씨의

권씨는 아들, 지명수배-구속된 어느정

권씨는 아들, 지명수배-구속된 어느정

오늘 항소심 열리는 '김기설씨 유서사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된 지남해 12월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예 3년여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강기훈(28)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변호인장은 1심에서 판결이 지남해나 허위감정 의혹 등의 항소로 인해 불리한 일정에 있지만은 않다고 보고 이미 구속된 김기설씨를 법정에서 변호할 권리가 구제적으로 무죄를 얻기 위해 유서가 강기훈에 필적하리라고 감정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국과수 공신력 땅에 떨어져도 강기훈씨는 여전히 '유죄'일까

변호인 필적감정 허구성 집중추궁할듯

2심 구속판결이 4월23일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양쪽은 12일 열릴 항소심 1차 공판부터 그동안 준비해온 입증 자료와 증인을 내세워 최대한 불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허구성을 증명하고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증인 4-5명을 내세워 김기설씨의 자살 직전 행적을 정밀 추적하며 △이민 국과수 허위감정 사건 서류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해 사증조서 등을 통해 김환수사의 비관한 정을 드러냄으로써 강씨의 무죄를 입증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유서와 강제 필적이 다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유안을 통한 유서와 강제 필적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사건으로 입장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유서 필적감정이 뇌물이나 뇌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과수 감정의 정확성을 계속 주장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변호인단이 1심에서 김기설씨의 필적이라고 제시한 14건의 문건이 2-3명의 필적이었기 확실하다"며 이 필적의 국과수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훈씨 오늘 항소심

지난해 분신사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기훈(2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유서와 강제 필적이 다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유안을 통한 유서와 강제 필적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 사건으로 입장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유서 필적감정이 뇌물이나 뇌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과수 감정의 정확성을 계속 주장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변호인단이 1심에서 김기설씨의 필적이라고 제시한 14건의 문건이 2-3명의 필적이었기 확실하다"며 이 필적의 국과수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23일 국과수 기록검증 하기로 하여 김형영씨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김형영씨는 김기훈씨 형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인현 총무부장 장(2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태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검찰과 변호인측의 피고인 직접신문과 증거신청이 진행됐다.

김형영씨는 이날 변호인측에서 김씨가 본인자살하기 전날인 5월 7일 오후 11시경 홍성온(25·여·김씨의 친구)씨가 전화했을 때 “비안하다”고 한 것은 “전날 새벽까지 불고 함께 술마신 것에 대한 사과였지 김씨가 본인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검찰이 동요인 임 부영씨의 수첩을 제시했을 때 유서 필적과 같아 보여 임씨가 유서를 대필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일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측 요청에 의해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분석실장 김형영(53·구속중)씨 등 7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국과수 유서대필사전 관련 등 서류에 대한 기록검증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국과수 필적감정 관련 기록과 김형영씨 뇌물수수사건 형사기록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측은 항소심 증인으로 김씨와 국과수 분석실 직할 직원 양부영씨, 홍성온씨 등 김기훈씨 친구 5명, 그리고 국과수 직원의 사실 간접인과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던 조병길(47·구속중)씨 등 8명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또 △유서대필사전 관련 필적감정뢰서 접수 및 발송 기록 △이 사건 필적감정자료 △김형영씨 등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형사기록 △이항형씨 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형사기록 등의 기록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성온씨는 피해자 임강이고 1심에서 충분히 증언했으며 △조병길씨는 유서대필사전과 관련이 없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으나 김형영씨등 나머지 증인의 채택에는 동의했다.

검찰은 기록검증에서는 이상열씨 관련 형사기록은 관련문서의 감정을 대기 과학수사운영과에서 주로 실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날 김씨는 다소 마른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으나 자신감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보낸 편지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청석에는 김씨의 어머니 등 가족, 신광호 국민연합 공동회장 등 제인사, 학생 등 1백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다음공판은 26일 오후 2시.

김형영씨 증인 채택

23일 국과수 기록검증 하기로

김기훈씨 형소심 23일 국과수 기록검증 하기로

본문자살한 김기훈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인현 총무부장 장(2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태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검찰과 변호인측의 피고인 직접신문과 증거신청이 진행됐다.

김형영씨는 이날 변호인측에서 김씨가 본인자살하기 전날인 5월 7일 오후 11시경 홍성온(25·여·김씨의 친구)씨가 전화했을 때 “비안하다”고 한 것은 “전날 새벽까지 불고 함께 술마신 것에 대한 사과였지 김씨가 본인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 「조선일보」에 실린 「국과수 기록검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영씨. 이 사진은 김형영씨가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재판 중인 모습이다. 그는 재판장 임태희 부장판사의 앞에서 서서 진술하고 있다.

「국과수 기록검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영씨. 이 사진은 김형영씨가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재판 중인 모습이다. 그는 재판장 임태희 부장판사의 앞에서 서서 진술하고 있다.

김형영씨는 이날 변호인측에서 김씨가 본인자살하기 전날인 5월 7일 오후 11시경 홍성온(25·여·김씨의 친구)씨가 전화했을 때 “비안하다”고 한 것은 “전날 새벽까지 불고 함께 술마신 것에 대한 사과였지 김씨가 본인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과수 기록검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형영씨

3.12 경향

김형영씨는 이날 변호인측에서 김씨가 본인자살하기 전날인 5월 7일 오후 11시경 홍성온(25·여·김씨의 친구)씨가 전화했을 때 “비안하다”고 한 것은 “전날 새벽까지 불고 함께 술마신 것에 대한 사과였지 김씨가 본인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收略는 개인차원, 축소 해석 검찰

신뢰성 잃은 감정, 증거안 돼, 편파적

수사기록은 김기훈씨의 유서대필 관련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형영씨의 진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서사건 기사자료

합소심판

총선 치른 후 2차공판은 어떻게 될지

국립대학장 겸 합소심판장 김기훈(28)씨에 대한 합소심판이 27일 서울 양천구 신원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실을 방불해 2시간 동안 국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조사에 참가한 검찰 각 변호사는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는 1심에서 증거의 유서필적과 강제 필적이 70% 이상 같아 동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적이 70% 이상 같다는 감정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합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기훈씨에 대한 공인신문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판기록 가운데 따르지 않은 주된 필적감정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3.28. 김기훈

강기훈씨 합소심공판

국과수 뇌물사건 증거 채택

합소심판장 김기훈(28)씨에 대한 합소심판이 27일 서울 양천구 신원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실을 방불해 2시간 동안 국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조사에 참가한 검찰 각 변호사는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는 1심에서 증거의 유서필적과 강제 필적이 70% 이상 같아 동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적이 70% 이상 같다는 감정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합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기훈씨에 대한 공인신문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판기록 가운데 따르지 않은 주된 필적감정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3.28. 김기훈

“유서감정 근거자료 없다”

김기훈씨 유서 재판 혐의로 구

속기소원 전민원 총무부장 김기훈(28)씨의 합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태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양천구 신원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실을 방불해 2시간 동안 국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조사에 참가한 검찰 각 변호사는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는 1심에서 증거의 유서필적과 강제 필적이 70% 이상 같아 동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적이 70% 이상 같다는 감정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합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기훈씨에 대한 공인신문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판기록 가운데 따르지 않은 주된 필적감정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3.28. 김기훈

강기훈씨 변호인 증인신문

합소심 2차 공판 “김씨 필적 불립했다” 진술

본인 자살한 김기훈씨의 유서를 대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전민원 총무부장 김기훈(28)씨에 대한 합소심 2차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씨의 친구 한송중(27·회사원)씨는 변호인신문에서 “문제가 된 유서글씨는 송진 기훈씨의 필적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밝힌 한씨는 “필소 기훈씨의 필적을 많이 봤는데 그 글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심당일인 지난해 5월17일 아

침 필리비전에 방영된 유서글씨를 보고 기훈씨의 필적임을 극명하게 알아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예정이던 김씨의 여자친구 홍정은(25·여)씨는 이미 1심에서 송중의 증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내용의 통지서를 재판부에 내고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열린 4차공판에서 홍씨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려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 등 5명에 대한 공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서사건 기사자료

합소심판

총선 치른 후 2차공판은 어떻게 될지

국립대학장 겸 합소심판장 김기훈(28)씨에 대한 합소심판이 27일 서울 양천구 신원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실을 방불해 2시간 동안 국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조사에 참가한 검찰 각 변호사는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는 1심에서 증거의 유서필적과 강제 필적이 70% 이상 같아 동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적이 70% 이상 같다는 감정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합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기훈씨에 대한 공인신문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판기록 가운데 따르지 않은 주된 필적감정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3.28. 김기훈

뇌물받은鑑定人의 증인신문

합소심판장 김기훈(28)씨에 대한 합소심판이 27일 서울 양천구 신원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실을 방불해 2시간 동안 국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조사에 참가한 검찰 각 변호사는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는 1심에서 증거의 유서필적과 강제 필적이 70% 이상 같아 동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적이 70% 이상 같다는 감정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합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기훈씨에 대한 공인신문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판기록 가운데 따르지 않은 주된 필적감정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3.28. 김기훈

팔복동산

“그래도 지구를 본다”

총고재판에서 지복동산을 팔고 나오며 김기훈씨가 먼저 유언한 것이다. 비록 법정에서는 권력의 함에 몰려진 자신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김기훈씨.

지난 12일(목) 열렸던 합소심 2차공판에서 김기훈씨의 유서를 대표한 변호인측인 김기훈(28)씨가 본심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본 자를 말했다고 진술한 김기훈씨는 오늘날의 ‘김기훈’을 연상케 한다.

유리하게 지난 5월 강경대군 지사사건 이후 파탈되던 부정의 불길에 한숨을 거뒀었던 김기훈씨가 유서 재판사건(1심)을 기어올라 변호인측이 사건의 실상을 말하며 유서 재판사건에 자신의 뜻을 내걸지 않는다면 열사들을 ‘운동권’의 조직적 혁신계획의 당면자’로 매도하는 화려한 언변을 발휘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들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는 돌지 않는다(?)

합소심판장 김기훈(28)씨에 대한 합소심판이 27일 서울 양천구 신원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실을 방불해 2시간 동안 국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조사에 참가한 검찰 각 변호사는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는 1심에서 증거의 유서필적과 강제 필적이 70% 이상 같아 동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적이 70% 이상 같다는 감정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합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기훈씨에 대한 공인신문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판기록 가운데 따르지 않은 주된 필적감정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3.28. 김기훈

국립대학장 겸 합소심판장 김기훈(28)씨에 대한 합소심판이 27일 서울 양천구 신원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실을 방불해 2시간 동안 국과수의 이 사건 필적감정에 대한 기록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조사에 참가한 검찰 각 변호사는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할 이 연구소 분석실장 김기훈(53·구속중)씨는 1심에서 증거의 유서필적과 강제 필적이 70% 이상 같아 동일필적이라는 감정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적이 70% 이상 같다는 감정부분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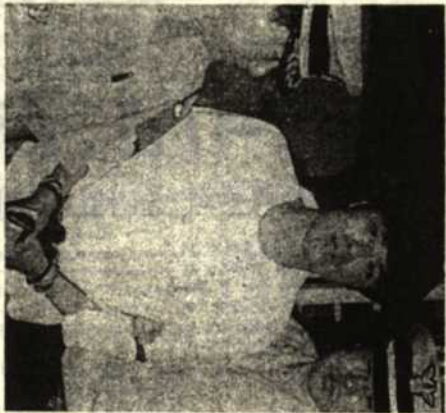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합소심 3차 공판에서 예정된 김기훈씨에 대한 공인신문은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재판기록 가운데 따르지 않은 주된 필적감정이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3.28. 김기훈

[4] 1992년 4월 2일 (목요일)

『유서대필사건』 강기훈씨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해맑은 웃음을 전미의 그늘위에



어머님,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님,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김기훈씨 할 소심 3차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변호인쪽 증인으로 출두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신규 기자>

“유서감정 경험의해 판단 강씨 필적과 특징 비교 마음속으로 계산”

국과수 김형영씨 진술
본신자살한 김기훈씨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8)씨에 대한 할소심 3차 공판이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태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3·구속중)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형영씨는 변호인신문에서 “두가지 이상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정할 때 필법의 유사비율이 70% 이상이면 동일필적, 45% 이하이면 다른 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

이라면서 “그러나 유서대필사건에서 유서와 강기훈씨 필적이 몇 % 이상 유사한지 구체적 수치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서와 강씨 필적에 대한 감정에서 전체 대조특징과 동일특징의 수, 그 비율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면서 “동일 여부 판단은 감정인의 오랜 경험과 능력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며 정확한 수치계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특징을 비교할 때 동일특징비율은 감정 때 마음속에서 수치가 계산되는 것이지 모든 특징이 비교돼 동일비율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변호인단

이 “김기훈씨의 필적”이라며 제출한 15종의 필적자료에 대해 유서 필적 등과의 동일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 등 공적 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할 것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쪽의 반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 사건으로 국과수의 공정한 감정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국내에 다른 신뢰할 만한 감정기관이 없다”며 검찰의 필적감정 신청을 반대했다.

다음 공판은 4월2일 오후 2시에 열려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25)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머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머님,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서를 대필 해주었다는 죄목 으로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말에서 "모 든 것이 한꺼번에 부러져도, 그림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 다.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저인 오해, 저 자신을 다짐하여 되 게 하는 한편이 부끄러워지는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조국의 오늘에 대한 슬 픔과 분노를 감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거짓말에 강기훈 씨에게 유서를 써 줄 생각하며 눈물로 받은 저 새우신 어머니.

스스로 꾸짖는 마음으로 뜻을 풀고자 합니다. 한 때나 마 장식을 의심하고 진언에 부 강행하며, 무죄를 부른 것은 한 인연에 대해 그토록 무심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지 않 고서는 단 한 줄의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설

강기훈씨는 당연히 무죄이다

국과수 감정인의 '횡설수설'이 반증

“유서 대필”이라는 혐의를 쓰고 있는 전민련 사회부장 강기훈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과 김기설씨의 수첩 조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신상규 검사는 항소심에서 강기훈씨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1심에서 재판부가 ‘유서 대필’의 유일한 증거로 받아들인 필적감정의 장본인인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1천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형사피의자로 증언대에 섰는데도 검사의 논고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강씨는 당연히 무죄이다. 1심부터 드러난 여러 사실들이 무죄를 입증한다. 변호인단이 1심 변론에서 주장했듯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도 포함되지 아니한 때”(형소법 제328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 되거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54조)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낚아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공소장에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서’라고 기재했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의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도 들어 있었다. “김형영 등 감정인들이 검찰의 의도대로 감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 권위자로서 신뢰할 수 있으며, 필적감정이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김형영씨가 검찰의 의도대로 감정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증거도 없

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 권위자”이며 “필적감정을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했다는 김씨가 그런 인물이 아님이 1심 뒤에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강기훈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지 두달 뒤인 지난 2월18일 김형영씨는 89년부터 5건의 감정과 관련하여 의뢰인들로부터 1천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값치름으로 수많은 거짓감정을 했음이 분명하다는 여론을 의면하고 수피만으로 그를 구속했다. 검찰이 거짓감정의 사례들을 밝혀냈다면, 강기훈씨는 당연히 공소가 취소되어 석방되었을 것이다.

김형영씨가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김기설씨의 유서를 감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소심 재판정에서 그의 입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는 1심 때 검찰쪽 증인으로 나와서 “필법의 유사 비율이 70% 이상이면 동일 필적, 45% 이하이면 다른 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는데, 2심에서도 그 말을 되풀이한 뒤 “유서대필 사건에서 유서와 강기훈씨 필적이 몇% 이상 유사한지 구체적 수치자료는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감정인의 오랜 경험과 능력에 따라’ 유서 대필 판정을 내렸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이보다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강기훈씨에 대한 또하나의 공소사실인 ‘이적단체 가입’에 관해서는 변호인단이 1심에서 “혁노맹 중앙위원들의 의견 차이로 강씨를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았음”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봄을 달구던 ‘강경대세 타살 정국’이 어느덧 한해를 맞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3·24 총선에서 민자당을 참패시켜 정치의 앞날이 밝아진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강기훈씨에게 단호히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공개하여 보도된 ‘법원 부조리’ 문제는 그 핵심을 벗어나 일종의 감정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듯 하다. 법원쪽은 변협이 대법 원문에 공개부터 한 방법론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구체적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해명해야 한다고 나섰고, 변협은 공보이사를 면직시키는 등 법원쪽을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변협의 공개가 공격이 된 대법관 자리를 놓고 재야의 지분을 차지하고자 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보라는 시각의 보도도 나오는 형편에서였다.

‘법원 부조리’ 발표의 의미

변협이 전국 2천2백여명의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8월초였고, 그 계기는 강경대세 치사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나타난 ‘법정소란’ 때문이었다. 변협은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이 법관, 검사, 당사자들

내가 서울지방법원사회의 임원일 때인 89년 7월, 서울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6공화국 사법부의 독립 및 사법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와 같은해 10월 ‘제6공화국 검찰의 위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의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화의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서울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눈에 비친 6공의 사법부와 검찰이 5공의 그것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검증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 조사에서도 6공의 사법부와 검찰이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하여 나타난 결과는 또 무엇인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다. 모든 국가의 제도나 기구가 다 그렇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탁받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신뢰라는 잣대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이야말로 그 신뢰를 얻는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와 재판에 간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변호사들의 눈에는 그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믿을 수도, 숭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 설문조사가 제기한 핵심이 아닐 수 없다.

핵심은 신뢰의 상실

그렇다면 법조계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공허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도 성실하며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선행하고,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굳게 세워 국민의 신뢰를 다시 모을 계도의 개혁



법조계 정화·개혁의 계기로



한 기 찬

이렇게 변호사들은 3년 전의 서울회의 설문조사 당시를 물론 최근 변협의 조사에서 모두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화의 진척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독립과 중립, 민주적 운영과 공정성을 염원하는 변호사들의 기대와 열망이 절게 배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단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진정한 의도, 그리고 그 조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의 지향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감정대립으로 비화

이 보도 이후 변협과 법원이 서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설문조사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협의 설문조사의 의미와 가치는 변호사들이 법관이나 검사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사례를 종합한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사법·검찰의 독립과 민주화, 재판의 공정성의 확보, 법조계 전체의 정화라는 커다란 과제를 향한 변호사들의 열망 확인인 것이다.

과 주변정화를 시작하여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 우선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를 탐색하여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법관인사, 법원에 대한 재교육, 처우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최근 몇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립법관의 대기 이적 사태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지만, 일약한 처우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법원에겐 언제까지 배고픈 성직자일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사문화된 법관 징계제도도 적당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개혁과 정화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의 한해화사건이나 안기부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이고 동시에 얼마나 지난한 과제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들도 자성하고 정화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나친 수임경쟁과 보수외의 고매화, 사건해결을 위한 무리한 시도 등은 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며, 이 모두가 변호사들의 자기정화를 촉구하는 대목들이다. 아무튼 변협의 ‘부조리’ 공개사건이 그 방법론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자성과 정화, 그리고 개혁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진화위부의 기회가 된다면 부조리 공개로 인한 파동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

“강기훈 무죄” 4백이 서언

각계인사 서명

공정재판·석방요구



박정희 대통령의 강기훈씨에 관해서는
정경회 공개 풍류 요구했다.
한인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인
사 25명은 이 사건의 공정한 재
판정함을 요청하는 서명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
장 임인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박정희 독사, 김신규 전세대
부총장 등 10명은 1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
계·학계, 법조계 등 각계인사 4
백 명이 서명한 “강기훈 무죄선방
을 위한 4백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유서사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강기훈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유서사건에
관련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심과
진리의 궁극적 승리를 믿게되는
제기가 되어야 한다”며 “강기훈씨
의 즉각 석방, 수사법부의 공정한

16일 오전 강기훈씨 무죄선방을 위한 공동대외위원회의 기록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필이 온대한 강기훈씨의 불죄 공개
와 공판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제공)

판정 스리훈의 강기훈씨에 관해서는
정경회 공개 풍류 요구했다.
한인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인
사 25명은 이 사건의 공정한 재
판정함을 요청하는 서명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
장 임인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16일 오전 강기훈씨 무죄선방을 위한 공동대외위원회의 기록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필이 온대한 강기훈씨의 불죄 공개
와 공판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본지제공)

판정 스리훈의 강기훈씨에 관해서는
정경회 공개 풍류 요구했다.
한인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인
사 25명은 이 사건의 공정한 재
판정함을 요청하는 서명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
장 임인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유서사건’ 강기훈씨 당연히 무죄 수취 구속자의 감정결과까지 증거채택

“강기훈 징역7년 자격정지3년
강피고인의 반국가적 반체제적
성향으로 볼 때 강피고인은 동료
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이
용할 사람.”
얼마 전까지 시국사범으로 안
양교도소 특별사동(징벌사동)에
서 강기훈씨와 같이 생활하다 출
소한 사람이다. 누우면 머리와
다리가 갈과 갈에 닿는 그리고

냄새가 온 방에 진동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코앞에 있는 영화 <박
백용>에서나 볼 수 있는 수용시
설이었다. 거기에서도 누구보다
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행여 집
전들이라도 들어올라치면 끝 한
조각이라도 혼자먹기 아까워 수
간재소자들과 나누어 먹던 그랬
다. 추운 겨울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독방에서 온기를 받하

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몸뿐이다.
먹는 것도 부실하여 건강을 유
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것저
것 모아 저개를 끓여먹는데 항상
저개를 끓여 나누어 주던 모습.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겨울 단
식중에도 자신의 힘든 몸은 아랑
곳없이 눈뜨기 바쁘게 시찰구 가
득 웃음을 머금고 동료의 건강을
걱정하던 그가 동료의 생명까지
혁명의 도구화한다는 선전은 함
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을, 그리고 성을 혁
명의 도구화한다고 매도하던 부
친서성고문사건을, 부친서성고문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
건을 보면서 과연 그랬을까 의아
해했다. 그렇지만 진실은 명백히
그것이 아니었다. 이번 김기철씨
유서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
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전 문서분석실장의 유서감정결과
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유서를 감정한 김
씨는 뇌물감정사건으로 구속되어
얼마 전까지 강기훈 동지가 있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돈
때문에 허위감정까지 한 사람의
도덕성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김기철씨 유서사건은
재야세력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
격을 입히며 지난해 5·6월부정으
로 위기에 처한 헌정권에 탈출구
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안
정이나 반공이때울로기를 이용하
여 조작해낸 사건들을 우리는 수
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 진실들은 세월이 지
나면서 서서히 밝혀져 왔다. “진
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늦
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
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강기훈씨는 반드시 무죄선방되어
야 할 것이다.
나 호 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6-1>

姜基勳씨 2심도 有罪

서울高法 金실장감정 수용 3년선고

【서울 24日電】 서울고법(재판장 김실장)은 24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김실장)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姜基勳씨(38)의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1970년 12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24日電】 서울고법(재판장 김실장)은 24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김실장)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姜基勳씨(38)의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基勳씨 필 유서대 항소심도 3년선고

【서울 24日電】 서울고법(재판장 김실장)은 24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김실장)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姜基勳씨(38)의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1970년 12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基勳씨 3년선고

항소심도 유서대筆 인정

【서울 24日電】 서울고법(재판장 김실장)은 24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김실장)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姜基勳씨(38)의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1970년 12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어마히 어마히...

【서울 24日電】 서울고법(재판장 김실장)은 24일 서울지방법원(재판장 김실장)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姜基勳씨(38)의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1970년 12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姜씨는 1970년 12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후, 서울고법으로 상소했다. 서울고법에서는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목회자들의 단식기도 24일 함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회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이 공판재판을 요구하며 시한부 단식기도를 벌이고 있는 기독교 목주년기념관을 찾은 강씨의 어머니 권태림(58)씨가 강씨의 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姜基勳씨 항소심 3년刑

서울高法 신빙성 논란 國科搜 감정 인정

【서울 22일】 서울고법 제1부 재판장 김기현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항소심에서 강기훈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증거 해석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국과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국과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설

상식 짓밟은 강기훈씨의 유죄판결

사법 불신 심화시키려는가?

언제나 시민의 '상식'이 패배하는 재판, 그 재판이 바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12월 20일의 1심판결에 이어, 지난 20일의 항소심 판결도 시민의 상식을 뒤엎기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항소심 판결이 상식적인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고 말해야 옳다. 왜냐하면 1심판결 이후에 강기훈씨에 대한 유죄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근본부터 크게 흔들렸음에도 판정결과가 1심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강기훈씨가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감정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은, 감정과 관련해 여러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상식적인 사람들은 "김형영 실장의 감정을 믿기 어렵다" 또는 "강기훈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1심 때와는 달라지겠구나" 이렇게들 생각했다. 그러나 법원과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소송부는 상식인들의 이런 판단이나 전망을 깬다. 재판부는 김형영씨의 감정 결과를 믿고, 강기훈씨가 김기철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유서대필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자유심증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시민의 '상식'이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갖는 핵심은, 감정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권력이나 정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 과연 공정성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돈을 상습적으로 받으면서 양심과 도덕과 과학을 유린하는 부패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권력에 불리한 감정 결과물 내용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영씨의 뇌물사건과 유서대필 감정 결과가 '별개'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구도 납

득시키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더구나 1심 재판부가 김형영씨를 '한글 필적감정의 최고 권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강기훈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할 때, 김씨가 파렴치범으로 드러난 이후에 내린 서울고법의 판결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형영씨가 구속되고, 국과수의 '과학'과 권위가 여지없이 추락한 이후에 보인 재판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씨가 구속되자마자 재판부는 마땅히 김씨의 감정 결과에 의문을 갖고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다시 시도했어야 옳았다. 우리가 유감을 갖는 것은 변호인단이 일본에서 데려온 필적감정 권위자의 감정결과가 무슨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감정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뇌물수취자의 감정 결과는 존중되고 그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또 다른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애써 무시되는 재판이 어떻게 공평하다 할 것인가. 더구나 최근에는 검찰이 자살한 김기철씨의 필체와 비슷한 김씨의 또다른 홀린체 글씨를 수사과정에서 입수하고도 그것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주장 역시 재판부에 의해 신중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강기훈씨는 1심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증거에 의해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심이 갈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식에 맞지 않는 재판부의 추론이나 논리구성이나 자유심증, 또는 형사소송법 정신이 존중되지 않은 판결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 때 변호인단이 퇴장하고 방청객이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며,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2심 재판부를 '음행이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상황은 시민의 '상식'이 유린당하는 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신 문

1988.6.18(제3주) (가)급인가

제1220호

1992년 4월 20일, 죄없는 청년 강기훈 형제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 날은 또 한번 사법부의 죽음을 알리는 조종이 울려진 날이다. 사법부가 죽은 것이 어디 이 날 한번뿐이겠는가...

강기훈 유죄선고 '자살'

때문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의문에 앞서 허탈과 좌절, 슬픔과 애통함을 맛보며 사법부에 대해 어떤 연민의 정을 갖게 된다. 자살자에 대해서는 할 말 할 바 없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죄수의 예외라 생각되어 이 글을 쓰면서 오랫동안 말살했다.

얼마 전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법부의 구조적 비리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야 알았는가"하면서 오히려 편견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했고 웃기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경우에 우리는 흔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항변한다. 2심 재판이 바로 그러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꿈이랄까 이상이었을까 아니, 늘 희망이란 유혹에 빠지곤 했다. 희망만이 삶을 이끌고 미래를 일궈내는 큰 힘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재판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했고 웃기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경우에 우리는 흔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항변한다. 2심 재판이 바로 그러했다. 상식과 양심의 집약이 곧 법인데, 그런 법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발상난, 쉼, 거짓, 형식논리 등으로 시간만 낭비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재판부의 임태희, 윤석중, 부구욱, 동 세 법관의 이름과 모습이 1심 재판부의 법관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 그 신기한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을 두려워했고 진실과 양심 앞에서 그대로 머뭇거리며 멍멍이 못함을 간접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약한 인간,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그 판결 앞에서 오히려 원고측인 검찰을 더 나무랐던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의 경우는 1심 재판부의 판결자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슬펐다. 도덕 세계에서 초범은 어설피고 서둘러 속죄를 위하여 노련한 고참이 되면 기술도 높고 하여 양심이 무디어진다면 후시 그런 타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이해해줄 수 있을는지, 착잡한 심정이다.

70년대 박정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곤 했다. 검찰은 죄도 아닌 죄를 열거하면서 말 잔치도 않은 것을, 때로라



사법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함세웅

은 문장, 현란한 법률용어를 총동원하여 공소장에 담아 고발했다. 그리고 늘 어김없이 발상난의 재판은 일정한 시간만큼 지속되었다.

공소장 복사한 판결문

그런데 그때마다 명관권이 나왔다. 공소장인지 검찰의 구형장인지 그것과는 제목과 말하는 주제만 달랐을 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공소장의 복사가 곧 판결문이었다. 한심한 명관결론이었다.

이런 판결문을 놓고 그대로 같은 법조계 출신이라고 변호사들은 그것은 공소장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라고 폄하해주었다.

곧 이 판결은 법관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달라는 법관 특유의 몸짓이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검찰과 법관들을 대하면서 그들은 그래도 몇년간 법을 전공했으니까 민족과 정의 앞에 한가닥 양심은 지니고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많은 자성인,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구속하고 재판하면서 그래도 불의한 세계 앞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피로워할 줄 알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검찰과 법관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는 착각이었다. 그들은 조금도 피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유신독재 체제를 옹호했다. 암흑, 바로 그것이 현실인 때였다.'

그때도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준 훌륭한 변호인들이 있었다. 이른바 인권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겉허한 마음으로 법조계의 현실을 반성하면서 해방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과 언론은 한꺼번에 이 되어 독재정권에 기생(寄生)한 기생(寄生)이었다고 고백했다. 회생을 무릅쓴

이들의 헌신적 변론과 용기있는 고백은 때로는 사회에 정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라진 선·빛·정의

1988년엔가 뜻있는 법관들이 사법부의 개혁과 정화를 위하여 앞장서서 무신하며 애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법조계의 귀감인 고 김홍섭 판사의 청빈한 삶과 고뇌의 모습이 또한 뇌리에 떠오른다. 어느 사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정의와 불의가 무쟁하고 있다. 문제는 선과 빛, 정의가 승리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병들고 죽게 마련이다.

오늘 사법부는 죽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우리는 되살아나야 한다. 사법부도 우뚝 제자리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개혁을 꾀했던 뜻있는 법관들을 통해 사법부가 되살아나야 한다. 시선에 미련을 갖지 말자. 우리에게 는 늘 새봄, 새 생명의 희망이 있지 않은가.

법관의 판결이 무슨 상관이나, 강기훈 형제의 죄 없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신부)

신 문

1988.6.18(제3주) (가)급인가

제1233호

지난 5월 8일 고 김기철씨의 1주기를 맞아 서준식이 그의 묘소 앞에서 느낀 상념을 적어 본사에 보내왔다. <원집자>

기철아, 그동안 잘 있었니? 자네의 1주기를 알기라도 하는지 이를 동안 계속 내리던 비가 그쳤네. 무겁게 흐란 하늘 아래 이곳 묘지는 유난히 울퉁퉁 스프링잔만 비 그친 모란공원을 지나가는 바람이 싱그럽기만 하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오기 전에 자네 무덤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예상은 했었네. 우리가 왔을 때 자네 무덤 앞에는 꽃 한송이 소수 한잔 없었고 조울한 묘비만 비바람을 견디며 호젓이 서 있었다네. '민주열사 김기철의 묘'... 묘비가 밀려난 걸 보니 운동권을 음모집단으로 오해하는 자네 때행, 묘비를 '열사'라고 새겼단 말이야. '열사'라 하면 '열사'라 하면 그 때행도 바빠서 지나가지 못한 모양일세.

기철아, 세월은 빨리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구나. 세월이 가도 결코 바뀌지 않는 눈빛으로 자네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우리, 백병도 안되는 수이... 이 시간 오늘 여기 이렇게 오셨네.

자네 놀라 지 않게, 그중에는 멀리 속초에서 온 동우전대 아이들이 15명이나 있다네! 모두 자네가 보고 싶어 할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네. 강기훈,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자네가 사랑했던 홍성은씨...

자네에게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준 죄밖에 없는 강기훈은 공권력의 무지마치한 거짓말을 지탱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아직도 어처구니없는 시련 속에 있지만 홍성은씨는 밤낮이 벌어진다 하네. 자네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면서도 운동장에서 대학 중퇴생 행세를 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하네.

벌써 김기철씨 1주기

하지만 기철아, 나는 알 것 같네. 가난한 가정, 어려서부터 계모 눈치 살피며 한 소년은 소중히 키웠을 독립투사의 아들, 그러나 머리 좋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이 잘못부성인 세상에서 결국은 상처부성인이 되어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입지전적 꿈의 큰 아픔을, 대학생활을 바라보던 자네의 가슴을 지져냈을 아픔을, 그렇게 학력을 속인 제대를 여성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네가 겪어야 했던 비련의 아픔을...

검사와 판사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무식자'의 유서 필적이 그리 달필일 리가 없다고 한다네. 그러나 졸업이어야 할 '무식자'인 자네의 그 거침 없는 달필이 바로 부러져버린 자네의 입지전적 꿈의 모든 아픔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네. 그것은 정녕 '베신'이 아닌 '아름'이었을 것인데, 홍성은씨

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데. 오늘 아침 자네의 무덤으로 오기 위하여 오랜만에 원진레이온 앞을 지나 경춘가도를 달려왔다. 1년 전, 나는 자네를 묻으러 이 길을 오다가 원진레이온에 잠깐 들러 자네를 위해 노제를 지냈었다네. '원진 직업'을 고뇌하며 자네와 함께 다닌 날의 은 경춘가도, 자네와 함께 만난 원진열사 '암들의 주름진 얼굴들'... 노제 지낼 때 이런 모든 상념이 머리 속에서 빙글빙글 맴돌다가 갑자기 눈물로 변해 한꺼번에 쏟아져 버렸었다네. 그 눈물 맛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려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가버렸는가? 자네와 함께 왔던 765번 좌석버스는 오늘 아침도 경춘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유서사건, 유서사건 하며 이 1년간을 나는 정신없이 살아왔네.



당신이 뿌린 씨 거목이 되는 날을...



서준식

자네가 쓴 유서, 그 너무도 눈이 익은 필적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애스고, 감옥에서는 고봉스럽게 단식기도를 하고 '유서사건' 항소심 때 참석도 있고 동문서우 맘 울렸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게 다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우왕좌왕했을 뿐, 자네가 타도를 외친 '폭력정권'은 여전히 눈 시피하고, 강기훈은 여전히 감옥에 있네. 그리고 자네의 명예도 더럽혀진 채 그대로네. 용서하게 이 못한 선배들.

그러나 기철아, 실망하지 말게.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네.

자네 동우전대 아이들 기억하나? 학원 민주화를 갈망하며 장래들의 무서운 테러와 맞서던 그 초동초통한 눈빛들. 지금 추모기도 추모기도 끝난 자네의 무덤 앞에서는 그 아이들이, 자네가 모르는 신입생까지 포함해서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자네를 위해 비장하게 추모가를 부르고 있다네. '기철이형, 열심히 살게요.' 이것이 자네가 산화한 직후에 그 아이들이 연세대학교에 붙인 대자보의 내용이었네.

동우전대대는 여전히 장래들이 편을 차고 있지만 참담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네. 자네가 '맘풀리며 뿌린 씨가 확실하게 움트고 있는 걸세.'

늘 슬펐던 어버이날

나는 밑네. 자네가 뿌린 씨, 이렇듯 지금도 자네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움트고 있음은. 그 작은 그들이 맘 풀리며 눈물 흘릴 때마다 무력무력 자라고 끝내는 가지 무성한 거목이 될 것인데. 그리고 못날 따곤 피아벌 아래 파파한 휴먼지 길을 가다 지친 사람들이 자네의 그 무성한 가지 그늘에 편안히 앉아 쉬며 옛 이야기를 할 걸세. "그 옛날 이성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유서사건'이라는 희한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폭력정권 타도를 외치며 스스로를 불사른 젊은이를 유서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모욕하기도 태연했다." 라고.

기철아, 오늘은 어버이 날, 살아 있을 때의 자네에겐 돌아가신 생모가 생각나 늘 슬픈 날이었을 어버이 날이네.

"기철이가 어찌 어머니

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 자네가 굳이 어버이 날을 분신 결행의 날로 삼은 이유는 나는 잘 모르지만 자네가 유서에 이렇게 쓴 나름의 뜻을 동의는 못해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네. 짐사나 판사야 끝까지 이해 못한 채 멍멍거리며 살 제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자네 아버님마저 끝내 이해 못하신다면 오죽이나 답답하겠는가?

자네 아버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네. 사실구일제에 참석하시라는 우리의 청을 거절하신 자네 아버님께 차마 오늘의 추모행사 연락을 못드린 거러네. 강기훈이 무죄선고를 받는 날, 그러니까 더럽혀진 자네 명예가 회복되는 날 여파한 뜻이 아버님을 찾아뵈겠다고 어찌나 깨웠던 것 우리의 부질없는 욕심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고이고이 잠들길

근게 단았던 문 조금 열었겠네. 자네를 위하여. 그리고 자네를 사랑했던 한사람의 선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친술함으로 찾아가 보겠네. 자네의 아버님도, 누님들도 그리고 홍성은씨도...

기철아, 이곳이 꼭 아늑해 보이는구나. 자네가 그리고 애매무연 원진 직업 사람 자 김봉환씨 그리고 자네가 간 뒤 굳이 자네의 뒤를 따른 김규정양과, 나란히 묻힌 자네 모습이 그나마 나에게 주는 위안이다. 고이 잘자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열십이 일하겠네. 열심히 살겠다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전 전민권 인권위원장>

